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6.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연 광 석**



# 목 차

|                                                                                    |    |
|------------------------------------------------------------------------------------|----|
| I.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                                                       | 1  |
| 1. 세입 결산 .....                                                                     | 1  |
| 2. 세출 결산 .....                                                                     | 3  |
| 가. 총괄 내역 .....                                                                     | 3  |
| 나. 이체·이용 및 이월 내역 .....                                                             | 7  |
| 다. 전용 내역 .....                                                                     | 7  |
| 3.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                                         | 8  |
| II.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                                                     | 12 |
| 1. 세입 .....                                                                        | 12 |
| 2. 세출(총괄) .....                                                                    | 14 |
| <input type="checkbox"/>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장기간 과소지급에 따른 임금관리 부실 및 지연이자 지급 검토 필요 ..... | 14 |
|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중심의 형식적 예산심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내부통제 기능 미흡 .....             | 18 |
|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및 청년·여성운영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의 적정성 검토 필요 .....                | 22 |
| 3. 세출(사업별) .....                                                                   | 27 |
| 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00-1031 단위사업) .....                                             | 27 |
| 1) 개 요 .....                                                                       | 27 |
| 2) 세부사업별 검토 .....                                                                  | 28 |
| 가) 자문회의 운영(1031-300 세부사업) .....                                                    | 28 |
| <input type="checkbox"/> 여성 부의장 임명 비율 저조로 법령 취지 및 국회 부대의견 이행 미흡 .....              | 38 |

|                                                  |     |
|--------------------------------------------------|-----|
| □ 행정구역 개편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한 부의장 임명 기준 강구 필요 .....   | 41  |
| □ 반복적 예산 증·감 조정 최소화 필요 .....                     | 44  |
| □ 동일 물품의 부서별 개별 구매로 인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해 .....       | 47  |
| 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00-1032 단위사업) .....          | 51  |
| 다. 정보화사업 추진(1000-1033 단위사업) .....                | 52  |
| 라.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                 | 53  |
| 마.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 .....                    | 55  |
| □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 부적정 .....                 | 56  |
| □ 실제 교육과정과 불일치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반복적 전용 지양 필요 .....    | 59  |
| 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00-1131 단위사업) .....              | 62  |
| 1) 개 요 .....                                     | 62  |
| 2) 세부사업별 검토 .....                                | 63  |
| 가)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세부사업) .....                | 63  |
| □ 전자적 배포수단 활용을 통한 기관지 발송비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 71  |
| 나)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세부사업) .....                 | 75  |
| □ 전용 시 보충성 원칙 준수 필요 .....                        | 79  |
| 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세부사업) .....               | 83  |
| □ 참여 실적 편차 해소를 위한 사업별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 93  |
| □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통한 비용 대비 성과 제고 필요 .....      | 97  |
|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 재설계 필요 .....           | 100 |
|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의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예산 운용의 비효율 ..... | 103 |
| □ 통일부 사업과의 중복 추진 및 국회 부대의견 반영 미흡 .....           | 107 |
| 사. 시설관리(1100-1132 단위사업) .....                    | 113 |

|                                   |     |
|-----------------------------------|-----|
| III.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       | 114 |
| 1. 재정상태표 .....                    | 114 |
| 가. 자 산 .....                      | 115 |
| 나. 부 채 .....                      | 116 |
| 다. 순자산 .....                      | 116 |
| 2. 재정운영 분석 .....                  | 117 |
| 가.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영비 .....          | 118 |
| 나. 비배분비용 .....                    | 118 |
| 다. 비배분수익 .....                    | 119 |
| 라.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 .....         | 119 |
| 3. 순자산변동 분석 .....                 | 120 |
| 가. 기초순자산 .....                    | 120 |
| 나. 재정운영결과 .....                   | 120 |
|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 .....              | 121 |
| 라. 조정항목 .....                     | 121 |
| IV.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 122 |



# I.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 1. 세입 결산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1,300만원으로 1,9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700만원이 수납(예산액 대비 수납률 53.8%)되었음.

### < 2025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세입<br>예산액 | 징수<br>결정액 | 수납액 | 불<br>납<br>결손액 | 미수납액 | 예산액과<br>수납액의<br>차액 | 예산액 대비<br>수납액 비율 |
|-----------|-----------|-----|---------------|------|--------------------|------------------|
| 13        | 19        | 7   | -             | 12   | △6                 | 53.8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도 세입예산의 주요 수납 내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업비)의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국가채권 세입 등의 기타경상이전수입 400만원 등임.

### < 2025년도 세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세입<br>예산액 | 징수<br>결정액 | 수납액 | 불<br>납<br>결손액 | 미수납액 | 예산액과<br>수납액의<br>차액 |
|-------------------|-----------|-----------|-----|---------------|------|--------------------|
| 일반회계              | 13        | 19        | 7   | -             | 12   | △6                 |
| 11관 재산수입          | 3         | 3         | 3   | -             | -    | -                  |
|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3         | 3         | 3   | -             | -    | -                  |

| 구 분           | 세 입<br>예산액 | 정 수<br>결정액 | 수납액 | 불 납<br>결손액 | 마수납액 | 예산액과<br>수납액의<br>차액 |
|---------------|------------|------------|-----|------------|------|--------------------|
|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 3          | 3          | 3   | -          | -    | -                  |
| 12관 경상이전수입    | 10         | 16         | 4   | -          | 12   | △6                 |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 10         | 16         | 4   | -          | 12   | △6                 |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 10         | 16         | 4   | -          | 12   | △6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 세출 결산

### 가. 총괄 내역

2025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357억 6,400만원이고, 이 중 97.4%인 348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억 2,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세출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예산액    | 전년도<br>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현액 대비<br>집행률 |
|--------|------------|--------|--------|-----|----------------|
| 35,764 | -          | 35,764 | 34,840 | 924 | 97.4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도 세출예산 프로그램은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1000)’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1100)’로 구성되어 있음.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 프로그램(1000)’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 조성(1031)’, ‘정보화사업(1033)’ 등 3개의 단위사업과 ‘자문회의 운영’, ‘정보화사업 추진’ 등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프로그램(1100)’은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사무처 인건비(1101)’ 등 4개의 단위사업과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등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 사업에 214억 1,200만원이 집행되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집행액(348억 4,000만원)의 61.5%를 차지하고 있음.

세부사업별로 보면, 자문회의 운영(1031-300) 사업 38억 4,400만원,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사업 22억 3,800만원,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사업 130억 3,400만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사업으로 61억 4,0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95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 2025년도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전년도<br>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집행률  |
|----------------------|--------|------------|--------|--------|-----|------|
| 합 계                  | 35,764 | -          | 35,764 | 34,840 | 924 | 97.4 |
|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1000) | 4,542  | -          | 4,542  | 4,286  | 256 | 94.4 |
|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31)  | 4,054  | -          | 4,054  | 3,844  | 210 | 94.8 |
| 자문회의 운영(300)         | 4,054  | -          | 4,054  | 3,844  | 210 | 94.8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32) | 37     | -          | 37     | 37     | -   | 100  |
| 행정효율성증진(304)         | 37     | -          | 37     | 37     | -   | 100  |
| 정보화사업(1033)          | 451    | -          | 451    | 405    | 46  | 89.8 |
| 정보화사업 추진(500)        | 451    | -          | 451    | 405    | 46  | 89.8 |
|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1100)   | 31,222 | -          | 31,222 | 30,554 | 668 | 97.9 |
| 사무처 인건비(1101)        | 7,127  | -          | 7,133  | 6,871  | 262 | 96.3 |
| 인건비(100)             | 7,127  | -          | 7,133  | 6,871  | 262 | 96.3 |
| 기본경비(1111)           | 1,915  | -          | 1,908  | 1,872  | 36  | 98.1 |
| 총액인건비대상(200)         | 384    | -          | 377    | 359    | 18  | 95.2 |

| 구 분                     | 예산액           | 전년도<br>이월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집행률  |
|-------------------------|---------------|------------|---------------|---------------|-----|------|
| 총액인건비비대상(250)           | 1,349         | -          | 1,349         | 1,333         | 16  | 98.8 |
| 전산운영경비(251)             | 182           | -          | 182           | 180           | 2   | 98.9 |
| <b>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31)</b> | <b>21,772</b> | -          | <b>21,772</b> | <b>21,412</b> | 360 | 98.3 |
| 자문위원 역량강화(300)          | 2,359         | -          | 2,356         | 2,238         | 118 | 95.0 |
| 지역협의회 운영(301)           | 13,239        | -          | 13,239        | 13,034        | 205 | 98.5 |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302)         | 6,174         | -          | 6,177         | 6,140         | 37  | 99.4 |
| <b>시설관리(1132)</b>       | <b>408</b>    | -          | <b>408</b>    | <b>399</b>    | 9   | 97.8 |
| 청사관리 운영(303)            | 408           | -          | 408           | 399           | 9   | 97.8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세출결산의 집행률 추이를 보면, 2021년 95.0%의 집행률에서 2022년 96.9%, 2023년도 96.7%, 2024년 97.2%, 2025년 97.4%로 증가 추세를 보임.

### < 최근 5년 세출 결산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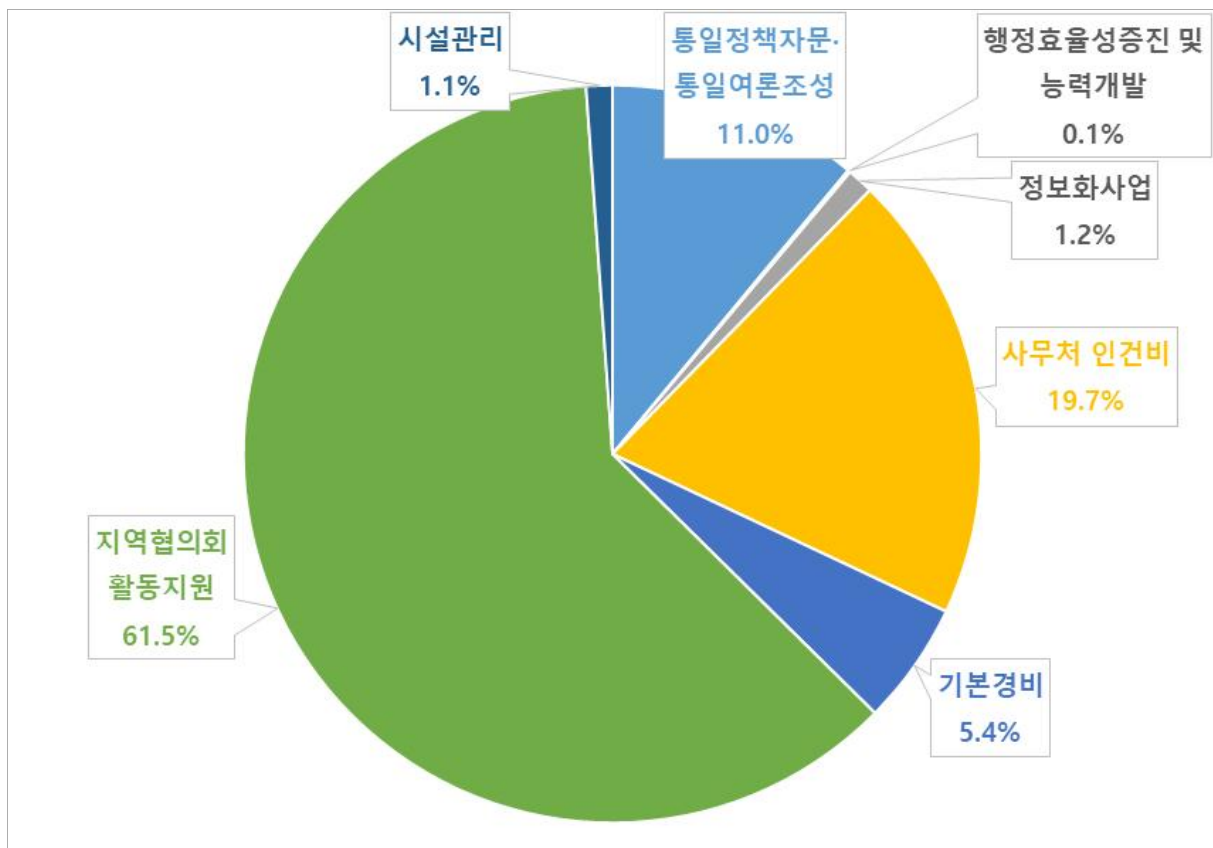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전년도<br>이월액 | 예산확정 후 증감액   |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다음<br>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집행률  |
|-------|--------|------------|--------------|------------------|----------|--------|-----------------|-------|------|
|       |        |            | [이용]<br>(전용) | <세목조정><br>{내역변경} |          |        |                 |       |      |
| 2021년 | 32,918 | -          | (±134)       | <±165><br>{±2}   | 32,918   | 31,262 | -               | 1,656 | 95.0 |
| 2022년 | 34,025 | -          | (±76)        | <±150><br>{±0}   | 33,728   | 32,686 | -               | 1,042 | 96.9 |
| 2023년 | 34,033 | -          | (±120)       | <±121><br>{±29}  | 34,033   | 32,907 | -               | 1,126 | 96.7 |
| 2024년 | 34,974 | -          | (±6)         | <±247><br>{±0}   | 34,974   | 33,996 | -               | 978   | 97.2 |
| 2025년 | 35,764 | -          | (±70)        | <±152><br>{±3}   | 35,764   | 34,840 | -               | 924   | 97.4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7개 단위사업의 집행액 비중을 보면,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61.5%(214억 1,200만원), 사무처 인건비 19.7%(68억 7,100만원),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 11.0%(38억 4,400만원), 기본경비 5.4%(18억 7,200만원), 정보화사업 1.2%(4억 500만원), 시설관리 1.1%(3억 9,900만원),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0.1%(3,700만원)임.

### < 2025년도 단위사업별 집행액 비중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나. 이체·이용 및 이월 내역

2025년도 세출결산의 이체·이용 및 이월액은 없음.

## 다. 전용 내역

2025년도 세출결산의 전용액은 2024년도 600만원 대비 6,400만원 증가한 7,000만원임.

### < 2025년도 세출예산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세부사업 명<br>(단위사업-세부사업)         | 목-세목<br>코드        |    | 세부사업 명<br>(단위사업-세부사업)         | 목-세목<br>코드 |                                 |
| 지역협의회 운영<br>(1131-301)        | 210-02,<br>210-07 | 13 | 지역협의회 운영<br>(1131-301)        | 220-01     | 행정실장 직무연수<br>숙박비 및 식비 부족분<br>충당 |
| 총액인건비대상<br>기본경비<br>(1111-250) | 210-01            | 10 | 총액인건비대상<br>기본경비<br>(1111-250) | 220-02     | 과장급<br>국내장기위탁훈련<br>해외연수비 충당     |
| 인건비<br>(1101-100)             | 210-05            | 7  | 총액인건비대상<br>기본경비<br>(1111-200) | 110-01     | 총액인건비제<br>직급상향분 보수<br>부족분 충당    |
| 자문회의 운영<br>(1031-300)         | 220-01,<br>220-02 | 40 | 자문회의 운영<br>(1031-300)         | 210-01     | 출범회의 및 상임위원회<br>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
| 계                             |                   | 70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3. 2025 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 주요 검토내용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민주평통은 공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을 법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집행하여 최근 3년간 296명에게 총 8,925만여 원의 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부적정한 인건비 관리 실태를 나타냈는 바,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및 다중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등 향후 유사한 임금 과소 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당 산정 및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민주평통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재정관리 및 재원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집행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2024년과 2025년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심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는 바, 향후 예산집행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예산 집행 현황,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민주평통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청년·여성운영위원회에 대해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인 시행령상 명확한 지급 근거가 미흡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수당 지급 근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회의체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법령에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민주평통은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제22기 여성 자문위원 비율(40.0%)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제19기(32.0%) 등 과거 임명 선례가 있음에도 제22기 여성 부의장 비율은 4.0%(1명)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는 바, 지도부 인선 시 여성 자문위원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선 기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고위 의사결정 기구 내 여성 대표성 및 성평등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민주평통은 ‘자문회의 운영’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등 동일 세목에 대해 단기간 내 감액과 증액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였는 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세목별 소요액 산정의 정확성과 중·장기적 집행 계획성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별 소요를 면밀히 산정하고 세목 조정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6) 민주평통은 ‘자문회의 운영’ 및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위원 및 내방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를 부서별로 개별 구매하여 동일한 일반배지에 서로 다른 단가를 적용하는 등 총 1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제21기 배지 구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었는

바, 동일·유사 물품에 대한 기관 차원의 수요를 사전에 취합·조정하여 통합 구매를 추진하는 등 예산 집행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7) 민주당평통은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2025년 과장급 국내장기위탁교육훈련 과정이 변경되어 기존 일반수용비(210-01) 대신 국외여비(220-02)가 필요해졌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반수용비를 다시 편성하여 반복적인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상황인 바, 교육훈련 과정별 실제 소요 경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기을일 필요가 있음.

(8) 민주당평통은 ‘지역협의회 운영’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2025년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실장 직무연수를 제주에서 개최하며 최근 물가 상승 및 지역적 비용 증가 요인을 이유로 당초 편성 예산(2,548만 원)보다 52.5% 초과한 3,886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을 전용하였는 바, 이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정례 사업에 대해 본예산 과소편성 후 전용을 통해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서 예산 변경의 보충성 원칙과 사전 예산 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개최 지역·물가 등 현실적 요인을 반영한 정밀한 예산 편성 노력과 함께 행사 규모 합리화 등 자체 비용 절감 방안을 우선 강구할 필요가 있음.

(9) 민주당평통은 ‘국내 여성 통일활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9,900만 원(17개 사업)을 집행하였으나, 주요 내용이 탈북여성 대상 멘토링·문화체험 등

에 치중되어 있어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과 사업 목적 및 참여 대상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고 사업 간 차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여성 통일리더 양성 및 여성위원 역량 강화 등 고유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0) 민주평통은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부여된 고유 과제인 멘토링보다 통일부 소관 정책과제인 인식개선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였는 바, 정부 시행계획에 따른 기관별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멘토링 중심으로 사업을 재정비하고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1) 민주평통은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일부의 남북통합문화센터 등 유관사업과 문화·예술, 소통·교류, 체험·봉사 등의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자체 결과보고서에서도 사업 중복을 인정하고 멘토링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는 바, 관계기관의 유사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을 차별화하고 국회 부대의견 및 자체 평가 결과를 사업 기획·집행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Ⅱ.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별 검토

### 1. 세입

2025년도 세입예산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고, 1,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과 동일함.

#### < 2025년도 세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세 입<br>예산액 | 징 수<br>결정액 | 수납액 | 예산액과<br>수납액의<br>차액 | 예산액 대비<br>수납율 |
|----------|------------|------------|-----|--------------------|---------------|
| 합 계      | 13         | 19         | 7   | △6                 | 53.8          |
| 기타재산이자수입 | 3          | 3          | 3   | 0                  | 100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0         | 16         | 4   | △6                 | 40.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도 징수결정액 1,900만원의 세부 내역은 사무처 및 국고보조금 (운영비, 사업비) 통장 이자 300만원,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400만원, 과년도 소송비용액 미상환금 1,200만원임.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음.

### < 최근 5년 세입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세 입<br>예산액 | 징 수<br>결정액 | 수납액 | 예산액과<br>수납액 차액 | 예산액 대비<br>수납율 |
|-------|------------|------------|-----|----------------|---------------|
| 2021년 | 6          | 27         | 15  | 9              | 250.0         |
| 2022년 | 5          | 24         | 12  | 7              | 240.0         |
| 2023년 | 5          | 32         | 20  | 15             | 400.0         |
| 2024년 | 5          | 19         | 7   | 2              | 140.0         |
| 2025년 | 13         | 19         | 7   | △6             | 53.8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최근 5년 세입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 도   | 과 목      | 금 액  | 세 부 내 역                         |
|-------|----------|------|---------------------------------|
| 2021년 | 기타재산수입   | 3    | o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통장 이자수입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2   |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 반납금, 퇴직급여 환급금 |
|       | 기타잡수입    | 0.02 | o 퇴직자 보유 공적항공마일리지 반납            |
|       | 기타고정자산매각 | 0.2  | o 배전반용 변압기 및 진공차단기 매각대금         |
|       | 계        | 15   |                                 |
| 2022년 | 기타재산이자수입 | 2    |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0   |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및 과오납 반납금           |
|       | 계        | 12   |                                 |
| 2023년 | 기타재산이자수입 | 2    |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8   |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과오납 반납금       |
|       | 계        | 20   |                                 |
| 2024년 | 기타재산이자수입 | 5    |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2    |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과오납 반납금       |
|       | 계        | 7    |                                 |
| 2025년 | 기타재산이자수입 | 3    | o 사무처 및 국조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
|       | 기타경상이전수입 | 10   | o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과오납 반납금       |
|       | 계        | 13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 세출(총괄)

□ 공무직 근로자 초과근무수당 장기간 과소지급에 따른 임금관리 부실  
및 지연이자 지급 검토 필요

2025년 민주평통은 최근 3년 간 공무직 근로자 296명에게 과소 지급되  
었던 초과근무수당 총 8,925만 7,120원을 소급하여 지급함.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분 2,001만 8,690원, 2024년분 2,051만 4,  
860원, 2025년(1월~10월)분 4,872만 3,570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총 8,925  
만 7,120원의 소급분이 발생하였음.

### <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지급액<sup>1)</sup> >

(단위 : 원)

| 연도                | 초과근무시간 | 당초 지급액        | 정정 지급액        | 소급분        |
|-------------------|--------|---------------|---------------|------------|
| 합계                | 95,471 | 1,405,506,300 | 1,494,765,253 | 89,257,120 |
| 2025년<br>(1월~10월) | 23,653 | 355,738,000   | 404,462,753   | 48,723,570 |
| 2024년             | 37,302 | 551,700,920   | 572,215,780   | 20,514,860 |
| 2023년             | 34,516 | 498,067,380   | 518,086,720   | 20,018,69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공무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sup>2)</sup>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그동안

1)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집행금액을 예산과목별로 작성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원, 명)

| 예산과목                    | 초과근무수당 소급분 지급대상자 수 | 집행액        |
|-------------------------|--------------------|------------|
| 기관운영지원(1111-200-2002)   | 3                  | 688,520    |
| 기관지제작(1131-300-3004)    | 2                  | 288,280    |
| 평화통일자료지원(1131-300-3005) | 2                  | 602,370    |
| 협의회 인건비(1131-301-3011)  | 289                | 87,677,950 |
| 합계                      | 296                | 89,257,12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소급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 제49조<sup>3)</sup>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의 과소 지급분을 정산하였다고 설명함.

실제로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산정 단가를 보면, 통상시급은 최저임금 시급보다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2025년에는 시간당 2,070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 연도별 통상시급과 최저임금시급 간 차액 현황 >

(단위: 원)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
| 최저<br>임금<br>시급(A) | 통상<br>시급<br>(B) | 차액<br>(B-A) | 최저<br>임금<br>시급(A) | 통상<br>시급<br>(B) | 차액<br>(B-A) | 최저<br>임금<br>시급(A) | 통상<br>시급<br>(B) | 차액<br>(B-A) |
| 14,430            | 15,010          | 580         | 14,790            | 15,340          | 550         | 15,040            | 17,110          | 2,07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적기에

-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3)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임.

그럼에도 민주평통은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적정 기준에 따라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임금이 과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특히 국가기관이 근로자 수당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사후적으로 대규모 소급 지급을 실시하게 된 것은 인건비 관리의 정확성과 기관 운영의 신뢰도를 저해함.

더욱이 이러한 과소 지급 사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동일한 과소지급 사례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은 내부 통제 시스템(후술하는 예산심의회<sup>4)</sup> 등)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민주평통은 외부 노무 전문가 자문이나 다중 검증 절차 등을 도입함으로써 유사한 임금 과소 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민주평통은 공무원 근로자에게 과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원금 8,925만 7,120원은 소급 지급하였으나, 해당 임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개정 「근로기준법<sup>5)</sup>」(2025. 10. 23. 시행)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

4)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예산집행심의회(민주평통은 예산심의회라는 명칭으로 설치)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는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민주평통은 2024년 및 2025년에 집행사항에 관하여는 동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5)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서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도 지급이 지연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과소 지급분의 경우에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금채권의 성격상 「민법<sup>6)</sup>」 상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단순히 과소 지급된 임금 원금을 정산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가기관으로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지연이자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 6)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 예산편성 중심의 형식적 예산심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 내부통제 기능 미흡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7)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 및 재원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는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

예산집행심의회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기구로서,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주요 방침,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 사항, 일용직·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인력의 운용 및 임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 < 예산집행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 구분      | 주요 내용                                                                                      |
|---------|--------------------------------------------------------------------------------------------|
| 설치 근거   | ○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 설치 목적   | ○ 재정관리 및 재원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
| 구성      | ○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7인 이상                                                                    |
| 주요 심의사항 | ○ ①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주요 방침, ②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 사항, ③ 일용직·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 사항 등 |

7)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예산집행심의회)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집행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sup>8)</sup>」을 마련하여 예산심의회 및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고 있음.

동 규정 제4조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위한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한 심의·의결 기능도 명시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의 주요 방침,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주평통은 2024년<sup>9)</sup>과 2025년 모두 예산 편성과 관련한 예산심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와 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기사업계획 수립 방향
2. 단년도 예산 편성 방향
3. 사업별 예산 편성 규모의 적정과 사업 구조조정
4.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의 주요 방침
2. 사업계획(계약, 설계 등을 포함한다)의 중대한 변경
3. 예산 이월·이용·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
4. 예산 집행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5.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6. 예산 절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예산낭비사례 및 우수 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 제안의 타당성 판단에 관한 사항
9. 예산 성과급 등 소속직원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처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2024년 예산심의회 회의 개최 실적

| 구분       | 일시                        | 안건                                                                   | 결과(주요 내용)                                                                                                                                                                                                                                                                                                                                                                                                                            |
|----------|---------------------------|----------------------------------------------------------------------|--------------------------------------------------------------------------------------------------------------------------------------------------------------------------------------------------------------------------------------------------------------------------------------------------------------------------------------------------------------------------------------------------------------------------------------|
| 예산<br>심의 | 2024년<br>5.17(금)<br>10:00 | 2025년 예산 요구안<br>적정성<br>(지출재구조화 및<br>재투자, 신규·증액<br>요구사업 우선순위<br>선정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결과: 2025년도 민주평통 예산안 344억 편성</li> <li>○ 심의결과 상세(단위 :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년사업 증·감액) 해외 출범회의 △1,543,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61, 국내출범회의 +822, 자문위원 구성 +304</li> <li>- (지출 재구조화) 평화통일 자료지원 △40, 해외 평화통일포럼 △150, 국내 정기회의 △31, 해외 특화사업 △125,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사업 △393</li> <li>- (증액요구 사업 순위) 국내 통일특화사업 2,800, 국내 출범회의 595, 간부위원 활동지원 655,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216</li> </ul> </li> </ul> |
| 집행<br>심의 |                           |                                                                      | 개최실적 없음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의회만 개최하였을 뿐, 예산 집행과 관련한 예산집행심의회는 개최하지 않았고, 2024년 및 2025년에도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회의만 개최되었을 뿐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 2025년 민주평통 예산심의회 회의 개최 실적 >

| 구분       | 일시    | 안건                      | 결과(주요 내용)                 |
|----------|-------|-------------------------|---------------------------|
| 예산<br>심의 | 5.15. | 2026년도 민주평통<br>예산안 편성 등 | 2026년도 민주평통 예산안 354억 편성 등 |
| 집행<br>심의 | -     |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집행심의회는 재정관리 및 재원 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부통제 장치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관리, 예산 집행의 주요 방침, 예산 전용 등 중요한 예산변경 사항을 사전에 점검·심의하기 위한 법정 기구임.

그럼에도 민주평통은 예산 편성과 관련된 심의 기능만 운영하고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심의 기능은 사실상 운영하지 않아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요구하는 내부통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5년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의 장기간 과소지급에 따른 소급 지급(8,925만 7,120원) 등은 예산집행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사전에 점검·개선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향후 민주평통은 예산집행심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예산 집행 현황,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위원회 및 청년·여성운영위원회 출석수당 지급의 적정성 검토 필요

2025년 민주평통은 운영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지역운영위원회 및 청년·여성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1인당 5만 원의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회의 출석 수당 편성단가 및 집행액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참석회의명              | 2025년 예산<br>편성단가(원) | 2025년 집행액<br>(백만원) |
|--------------|----------------------|--------------------|---------------------|--------------------|
| 자문회의<br>운영   | 정책건의·<br>법정위원회<br>운영 | 운영위원회<br>(소위원회 포함) | 50,000              | 6                  |
|              |                      | 상임위원회              |                     | 15                 |
|              |                      | 분과위원회<br>(소위원회 포함) |                     | 77                 |
|              | 지역<br>운영위원회          |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 53                 |
|              |                      |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 172                |
|              |                      |                    |                     | 2                  |
| 자문위원<br>역량강화 | 청년·여성위<br>원 역량지원     | 청년 운영위원회           |                     | 1.8                |
|              |                      | 여성 운영위원회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회의 출석 수당의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수당 지급 대상 회의는 ① 통일자문회의, ② 상임위원회, ③ 운영위원회, ④ 지역회의·협의회 및 그 지회, ⑤ 지역운영위원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반면,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청년·여성운영위원회는 시행령상 회의 출석 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회의 출석 수당 관련 시행령 규정 >

| 구분                 | 규정내용                                                                                                                                                                                                                                                                                                                                                                                                                                                                                       |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br>시행령 | <p>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u>통일자문회의</u>, <u>법 제18조에 따른 상임위원회</u>(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 <u>법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u>(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u>지역회의·협의회 및 그 지회</u>, <u>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운영위원회의</u>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국내외의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별표]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0%;">구분</th><th>지급기준</th></tr> <tr> <td>회의 출석 수당</td><td>매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td></tr> </table> | 구분 | 지급기준 | 회의 출석 수당 | 매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 |
| 구분                 | 지급기준                                                                                                                                                                                                                                                                                                                                                                                                                                                                                       |    |      |          |                    |
| 회의 출석 수당           | 매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                                                                                                                                                                                                                                                                                                                                                                                                                                                                         |    |      |          |                    |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는 각각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설치·운영되는 회의체이므로 관련 회의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여성운영위원회의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p>10)</sup>」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p>11)</sup>」에 따라 참석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와는 구별되는 회의체로 구성·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를 시행령상 수당

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지원 등)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지원 등) 사무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인 운영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

또한 청년·여성운영위원회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회의체로서, 시행령상 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럼에도 회의 출석 수당과 같이 위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규정」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회의 출석 수당은 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인 만큼,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은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행령상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청년·여성운영위원회에 대한 현행 수당 지급 근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해당 회의체에 대한 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지급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법성·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소결

이상과 같이 민주평통은 공무원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을 장기간 과소 지급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였음.

또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회의체에 대해서도 회의 출석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 편성·집행 및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음

특히 공무원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지급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8,925만원이 과소 지급되었음.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노동관계 법령을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례로, 임금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됨.

아울러 회의 출석 수당의 경우 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급부인 만큼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여야 함에도 시행령상 지급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회의체에 대해서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만큼, 현행 수당 지급의 적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더욱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내부통제 장치인 예산집행심의회가 최근 2개 연도 동안 예산 편성 관련 안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임금관리, 집행실적 점검 등 주요 집행사항에 대한 심의

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민주평통의 예산 집행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따라서 민주평통은 개별 사안에 대한 사후적 보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집행·점검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3. 세출(사업별)

#### 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1000-1031 단위사업)

##### 1) 개 요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회의 운영’ 단일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단위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40억 5,400만원이며, 이 중 94.8%인 38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1,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통일정책자문<br>·통일여론조성     | 4,054 | 4,054 | -          | -        | 4,054    | 3,844 | 210 | 94.8              |
| ○ 자문회의 운영<br>(1031-300) | 4,054 | 4,054 | -          | -        | 4,054    | 3,844 | 210 | 94.8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 세부사업별 검토

### 가) 자문회의 운영(1031-300 세부사업)

‘자문회의 운영’ 사업은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법정회의 개최와 통일여론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국내·해외 출범회의’, ‘자문회의 구성’, ‘자문위원 일반지원’, ‘간부위원 활동지원’, ‘직능별정책회의’, ‘지역운영위원회’ 등 총 8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과 예산현액은 40억 5,400만원이며, 이 중 94.8%인 38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1,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자문회의 운영       | 4,054 | 4,054 | -          | -        | 4,054    | 3,844 | 210 | 94.8              |
|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 578   | 578   |            | 35       | 613      | 612   | 1   | 99.8              |
| ·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 242   | 242   |            | ±2       | 242      | 238   | 4   | 98.3              |
| · 국내·해외 출범회의    | 2,041 | 2,041 |            | △50      | 1,991    | 1,847 | 144 | 92.8              |
| · 자문회의 구성       | 304   | 304   |            | 20       | 324      | 321   | 3   | 99.1              |
| · 자문위원 일반지원     | 157   | 157   |            |          | 157      | 154   | 3   | 98.1              |
| · 간부위원 활동지원     | 249   | 249   |            |          | 249      | 205   | 44  | 82.3              |
| · 직능별정책회의       | 182   | 182   |            | ±2       | 182      | 175   | 7   | 96.2              |
| · 지역운영위원회       | 300   | 300   |            | △4       | 296      | 292   | 4   | 98.6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210목) 20억 4,700만원, 여비(220목) 10억 8,000만원 등임.

< 2025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목·세목별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br>용 등 | 예비비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 예산    | 추경    |            |            |     |          |       |            |     |
| ○ 자문회의 운영 |        | 4,054 | 4,054 | -          | -          | -   | 4,054    | 3,844 | -          | 210 |
| 110-04    | 일용임금   | 70    | 70    | -          | -          | -   | 70       | 68    | -          | 2   |
| 210       | 운영비    | 2,020 | 2,020 | -          | 40         | -   | 2,060    | 2,047 | -          | 13  |
| 220       | 여비     | 1,262 | 1,262 | -          | △ 40       | -   | 1,222    | 1,080 | -          | 142 |
| 240-01    | 사업추진비  | 329   | 329   | -          | -          | -   | 329      | 325   | -          | 4   |
| 250-02    | 직책수행경비 | 121   | 121   | -          | -          | -   | 121      | 100   | -          | 21  |
| 250-03    | 특정업무경비 | 14    | 14    | -          | -          | -   | 14       | 14    | -          | -   |
| 260-01    | 일반연구비  | 77    | 77    |            |            |     | 77       | 75    |            | 2   |
| 310-04    | 기타보전비  | 128   | 128   | -          | -          | -   | 128      | 105   | -          | 23  |
| 320-09    | 고용부담금  | 8     | 8     | -          | -          | -   | 8        | 5     | -          | 3   |
| 430-01    | 자산취득비  | 25    | 25    | -          | -          | -   | 25       | 25    |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은 자문위원 임기 2년을 주기로 하여 출범하는 홀수년도에는 국내·해외 출범회의가, 출범회의 다음연도인 짝수년도에는 국내·해외 지역회의가 각각 개최됨.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최근 3년간, 자문회의의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 연 도   | 사업 추진 현황                                                                                                                                                                                                                                                                                                                                                                                                                                                                                |
|-------|-----------------------------------------------------------------------------------------------------------------------------------------------------------------------------------------------------------------------------------------------------------------------------------------------------------------------------------------------------------------------------------------------------------------------------------------------------------------------------------------|
| 20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개최 : 4회</li> <li>○ 상임위원회 개최 : 1회</li> <li>○ 분과위원회 개최 : 38회</li> <li>○ 정책 건의 : 11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7회)</li> <li>○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3회</li> <li>○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li> <li>○ 통일문제여론조사 : 15회</li> <li>○ 국내출범회의 : 10,525명 참석(48.8%)</li> <li>○ 해외출범회의 : 2,523명 참석(62.5%)</li> <li>○ 자문위원 위촉 : 제21기 자문위원 21,984명 위촉</li> <li>○ 직능별 정책회의 : 7회, 653명 참석</li> <li>○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72회, 1,318명 참석</li> <li>○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262명 참석</li> </ul> |
| 202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개최 : 4회</li> <li>○ 상임위원회 개최 : 1회</li> <li>○ 분과위원회 개최 : 36회</li> <li>○ 정책 건의 : 12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8회)</li> <li>○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2회</li> <li>○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li> <li>○ 통일문제여론조사 : 6회</li> <li>○ 국내지역회의 : 8,713명 참석(49.5%)</li> <li>○ 해외지역회의 : 2,566명 참석(63.1%)</li> <li>○ 직능별 정책회의 : 6회, 485명 참석</li> <li>○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72회, 1,285명 참석</li> <li>○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20회, 311명 참석</li> </ul>                                             |
| 202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개최 : 4회</li> <li>○ 상임위원회 개최 : 1회</li> <li>○ 분과위원회 개최 : 37회</li> <li>○ 정책 건의 : 11회(분기별 정기건의 4회, 수시건의 7회)</li> <li>○ 남북관계전문가토론회 : 2회</li> <li>○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4회</li> <li>○ 통일문제여론조사 : 5회</li> <li>○ 국내출범회의 : 9,159명 참석(48.7%)</li> <li>○ 해외출범회의 : 2,515명 참석(65.9%)</li> <li>○ 자문위원 위촉 : 제22기 자문위원 22,824명 위촉</li> <li>○ 직능별 정책회의 : 6회, 527명 참석</li> <li>○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 72회, 1,205명 참석</li> <li>○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 15회, 257명 참석</li> </ul>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1)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통일 관련 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기 위한 법정회의를 개최하여 평화통일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자문·건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정위원회<sup>12)</sup>는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대통령)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10개 이내로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정위원회 현황 >

| 기 구                  | 구 성                                                       | 기 능                                                                                                                                          |
|----------------------|-----------------------------------------------------------|----------------------------------------------------------------------------------------------------------------------------------------------|
| 상임위원회<br>(법 제18조)    | 500명<br>(부의장 25명, 분과위원장 10명,<br>직능대표 상임위원 463명,<br>간사 2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사항</li> <li>○ 의장이 명한 사항</li> <li>○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li> </ul>                           |
| 운영위원회<br>(법 제19조)    | 50명<br>(부의장 25명, 직능대표<br>운영위원 24명, 간사 1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li> <li>○ 자문위원 해촉 심사</li> <li>○ 기타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
| 분과위원회<br>(법 제18조제5항) | 10개 이내 분과×50명 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별 안건 심의 및 건의</li> <li>○ 분과별 통일정책 연구</li> </ul>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2)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은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통일여론 수렴 및 대상·시기별 여론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그 결과를 통일 관련 정책 자문 또는 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음.

2025년도 동 내역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통일여론분석 보고서를 4회 발간하고, 통일문제 여론조사를 12회 실시하였으며,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2회 개최하였음.

### < 2024년 및 2025년도 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집행실적       |     |            |     |
|--------------|------------|-----|------------|-----|
|              | 2024년      |     | 2025년      |     |
|              | 발간 등<br>횟수 | 집행액 | 발간 등<br>횟수 | 집행액 |
| 통일여론분석보고서 발간 | 4회 발간      | 90  | 4회 발간      | 92  |
| 통일문제 여론조사    | 14회 실시     | 104 | 12회 실시     | 103 |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2회 개최      | 36  | 2회 개최      | 43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도 통일문제 정기 여론조사의 기간 및 조사대상은 아래 표와 같음.

### < 2025년도 통일문제 정기 여론조사 기간 및 조사대상 >

| 구 분<br>(대주제)                             | 조사기간         | 조사대상                       |
|------------------------------------------|--------------|----------------------------|
| 정기 1차<br>(안보환경 대격변기<br>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 3.21.~3.23.  |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                                          | 3.21.~3.27.  |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
|                                          | 3.21.~3.27.  | ·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
| 정기 2차<br>(대내외 환경 변화와<br>통일·대북정책 쇄신 방향)   | 6.27.~6.29.  |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                                          | 6.27.~7.3.   |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
|                                          | 6.27.~7.3.   | · 제21기 자문위원 대상             |
| 정기 3차<br>(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여건<br>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 9.12.~9.14.  |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                                          | 9.12.~9.18.  |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
| 정기 4차<br>(화해·협력의 남북관계<br>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  | 12.5.~12.7.  |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                                          | 12.5.~12.11. | ·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           |
|                                          | 12.5.~12.11. | · 제22기 자문위원 대상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 정기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2025년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내용 >

| 구분  |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주제                                                                                                          | 결과 활용                        |
|-----|-------------------------------------------------------------------------------------------------------------------------|------------------------------|
| 1분기 |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영향도, △통일·대북정책 중점 추진과제, △러우전쟁 북한군 포로송환, △통일 공감대 확산 필요사항, △청년세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효과적 방법,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 「통일 여론·동향」 발간<br>2분기 정책건의 연계 |
| 2분기 |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최우선 과제, △대북정책 추진에 가장 필요한 사항, △남북 교류협력 중점 추진 분야, △사회적대화 활성화 공감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통 역할,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 「통일 여론·동향」 발간<br>3분기 정책건의 연계 |
| 3분기 | △대북·통일정책 분야 국정과제 중 우선 추진사항,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우선 추진사항, △사회적 대화 중점 추진과제, △한일정상회담 합의와 한반도 정세 영향도,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 「통일 여론·동향」 발간<br>4분기 정책건의 연계 |
| 4분기 |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공감도,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국가관계 공감도, △2026년 남북관계 전망,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방향, △사회적대화 참여 시 중요 기준, △통일관련 추이분석 등          | 「통일 여론·동향」 발간<br>4분기 정책건의 연계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2025년도 통일여론조사 정기조사 응답률 현황 >

| 구분       | 국민여론조사                                                                                                                                                                                    | 전문가 여론조사                                                                                                                                                                                      | 자문위원 여론조사                                                                                                                                                       |
|----------|-------------------------------------------------------------------------------------------------------------------------------------------------------------------------------------------|-----------------------------------------------------------------------------------------------------------------------------------------------------------------------------------------------|-----------------------------------------------------------------------------------------------------------------------------------------------------------------|
| 조사<br>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국민(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li> <li>· 분기별 3일</li> <li>· 전화면접조사<br/>(가구전화 20%, 휴대전화 80%)</li> <li>·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li> <li>· 글로벌알앤씨(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북한 전문가 150명</li> <li>· 분기별 7일</li> <li>·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병행조사</li> <li>·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li> <li>· 전문가 대상 추가문항 1~2개</li> <li>· 글로벌알앤씨(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수 자문위원 대상</li> <li>· 분기별 7일</li> <li>·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병행조사</li> <li>· 고정문항 5개, 현안문항 5개</li> <li>· 자체 온라인 조사</li> </ul> |
| 1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3.21.~3.23.(3일)</li> <li>· 응답률 9.9%</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3.1%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3.21.~3.27.(7일)</li> <li>· 100명 응답(응답률 66.7%)</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5.7%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3.21.~3.27.(7일)</li> <li>· 8,420명 응답(응답률 40.9%)</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0.8%p</li> </ul>                   |
| 2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6.27.~6.29.(3일)</li> <li>· 응답률 9.3%</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3.1%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6.27.~7.3.(7일)</li> <li>· 100명 응답(응답률 66.7%)</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5.7%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6.27.~7.3.(7일)</li> <li>· 8,781명 응답(응답률 42.7%)</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0.8%p</li> </ul>                    |
| 3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9.12.~9.14.(3일)</li> <li>· 응답률 9.7%</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3.1%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9.12.~9.18.(7일)</li> <li>· 100명 응답(응답률 66.7%)</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5.7%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기 자문위원 구성이 완료되지<br/>않아 미 실시</li> </ul>                                                                               |
| 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12.5.~12.7.(3일)</li> <li>· 응답률 10.1%</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3.1%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12.5.~12.11.(7일)</li> <li>· 102명 응답(응답률 68%)</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5.5%p</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12.5.~12.11.(7일)</li> <li>· 10,832명 응답(응답률 51.7%)</li> <li>· 신뢰수준 95%,<br/>표본오차 ±0.7%p</li> </ul>                 |

주: 국민여론조사 응답률은 전화조사 응답에 성공한 횟수에 대한 것임. 국민여론조사는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 할당 추출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며, 대부분의 경우 1,000명 정도를 표본으로 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3) 국내·해외 출범회의

‘국내·해외 출범회의’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sup>13)</sup>에 따라 2년에 한 번 의장(대통령)의 소집으로 출범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자문위원의 임기(2년)가 시작되는 해에는 출범회의가, 출범 다음연도에는 각 지역별로 지역회의가 각각 개최됨.

국내의 경우 2025년에 제22기 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전체회의로 열렸고, 2026년에는 각 지역회의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해외의 경우 2025년에 각 해외협의회별 현지 출범회의로, 2026년에는 해외권역별 자문위원을 국내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게 됨.

2025년도의 경우, 12월 2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내 출범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해외 출범회의는 8개 권역에 걸쳐 44회 개최되었음.

#### < 2025년 국내 출범회의 개최 현황 >

(단위: 명, %)

| 구 분     | 일자(기간)            | 장 소            | 참석인원(참석률)                 |
|---------|-------------------|----------------|---------------------------|
| 국내 출범회의 | 12. 2.            | 킨텍스            | 9,159명/18,814명<br>(48.7%) |
| 해외 출범회의 | 11. 16. ~ 12. 19. | 해외 협의회 활동 거점도시 | 2,515명 /3,816명<br>(65.9%) |

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 (4) 자문위원 · 간부위원 지원

‘자문위원 일반지원’과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지역통일활동 지원과 원활한 직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자문위원 일반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 5,700만원 중 98.1%인 1억 5,4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4,900만원 중 82.3%인 2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4,4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자문위원 · 간부위원 지원 사업 예산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 행 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자문위원<br>일반지원<br>(3005) | 157 | 157 | -          | -         | 157      | 154   | 3   | 98.1              |
| · 간부위원<br>활동지원<br>(3006) | 249 | 249 | -          | -         | 249      | 205   | 44  | 82.3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인 전체 자문위원 25,000명을, 간부위원은 수석부의장(1명)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간사(1명), 상임위원회 간사(2명), 국내·외부의장(24명), 분과위원장(10명), 분과위원회 간사(10명) 등 48명을 의미함.

수석부의장(1명)은 의장(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며, 기타 간부자문위원(47명)은 지역의 통일활동 및 정책건의 활동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으로, 각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sup>14)</sup>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sup>15)</sup>

### < 간부자문위원별 활동경비 월별 지급 현황 >

(단위: 천원)

| 구 분 | 수석<br>부의장 | 운영위<br>간사 | 상임위<br>간사 | 부의장 | 분과위원장 | 분과위<br>간사 |
|-----|-----------|-----------|-----------|-----|-------|-----------|
| 지급액 | 6,000     | 1,500     | 1,300     | 300 | 200   | 15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시행령 제5조제2항(수당과 여비 등)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5)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 지급하는 직무관련 활동경비는 없음.

## □ 여성 부의장 임명 비율 저조로 법령 취지 및 국회 부대의견 이행 미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는 자문위원 위촉 시 여성 위원 40% 이상, 청년 위원 30% 이상의 비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기 자문위원 구성은 여성 40.0%, 청년 30.5%로 해당 법정 기준을 충족하였음.

반면, 같은 법 제6조제2항<sup>16)</sup>은 부의장 임명 시 여성 부의장이 전체 부의장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22기 부의장단은 전체 25명 중 여성 부의장이 1명(4.0%)에 불과하여 법령이 지향하는 여성 대표성 확보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 < 제22기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비율 및 여성 부의장 수 현황 >

|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비율 |       | 여성 부의장 수 |           |
|-----------------|-------|----------|-----------|
| 여성              | 청년    | 총 부의장 수  | 여성인 부의장 수 |
| 40.0%           | 30.5% | 25명      | 1명(4%)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더욱이 국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음.

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의장·부의장)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 < 2025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대의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그럼에도 2025년 출범한 제22기 부의장단의 여성 비율은 4.0%에 그쳐 제21기(8.0%)보다도 낮아졌으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

### < 제15~22기 여성 부의장 수 현황 >

| 구 분                   | 총 부의장 수 | 여성인 부의장 수 |
|-----------------------|---------|-----------|
| 제15기('11.7.~'13.6.)   | 20명     | 1명(5%)    |
| 제16기('13.7.~'15.6.)   | 25명     | 5명(20%)   |
| 제17기('15.6.~'17.6.)   | 25명     | 4명(16%)   |
| 제18기('17.9.~'19.8.)   | 25명     | 6명(24%)   |
| 제19기('19.9.~'21.8.)   | 25명     | 8명(32%)   |
| 제20기('21.9.~'23.8.)   | 25명     | 7명(28%)   |
| 제21기('23.9.~'25.8.)   | 25명     | 2명(8%)    |
| 제22기('25.11.~'27.10.) | 25명     | 1명(4%)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25명의 한정된 부의장 정원 안에서 지역·직능·조직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서 여성 비율이 법 취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동일한 정원 구조 아래 운영된 제19기에서는 여성 부의장 8명(32.0%)이 임명된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원 제한이나 대표성 고려만으로 현재의 낮은 여성 비율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임.

특히 제22기 전체 자문위원 중 여성 비율이 40.0%로 시행령상 권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은 부의장으로 임명 가능한 여성 인력풀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을 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장단에서 여성 비율이 4.0%에 그친 것은 여성의 고위직 참여 확대라는 법령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자문위원 단계에서는 성별 균형이 일정 부분 확보되고 있음에도, 지도부 구성 단계에서는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따라서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의 취지와 국회의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부의장 임명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인선 기준과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여성 자문위원 비율이 이미 40%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지역·직능 대표성과 함께 성별 균형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여성의 고위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 내 성평등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구역 개편 등 변화하는 여건을 고려한 부의장 임명 기준 강구 필요

민주평통은 그동안 17개 광역시·도 및 이북5도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 지역별 부의장 18인을 사실상 고정적으로 임명하여 왔음.

< 최근 5기수 부의장 임명현황 (18~22기) >

(단위: 명)

| 구분  | 임기                 | 부의장<br>총수 | 국내<br>부의장 | 해외<br>부의장 | 여성<br>부의장 | 청년<br>부의장 |
|-----|--------------------|-----------|-----------|-----------|-----------|-----------|
| 18기 | ‘17.9.1~’19.8.31.  | 25        | 19        | 5         | 1         | -         |
| 19기 | ‘19.9.1~’21.8.31.  | 25        | 19        | 5         | 1         | -         |
| 20기 | ‘21.9.1~’23.8.31.  | 25        | 19        | 5         | -         | 1         |
| 21기 | ‘23.9.1~’25.8.31.  | 25        | 19        | 5         | 1         | -         |
| 22기 | ‘25.11.1~’27.10.31 | 25        | 19        | 5         | 1         | -         |

자료: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국내부의장(19명)은 수석부의장 1인 + 국내 지역별 부의장 18인 (17개 시·도+이북 5도)의 합계임.

이러한 방식은 전국 단위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수의 변동이 예상되는 현행 행정환경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특히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여 기존 17개 광역자치단체는 16개로 감소하였으며, 향후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다른 권역에서도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 시·도 단위 행정구역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이 지역별 부의장 수를 사실상 고정적으로 유지할 경우, 실제 행정구역 체계 변화와 부합하지 않는 인선 구조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역 대표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는 유지하면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보다 유연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부의장 구성은 전체 25명 중 국내 지역별 부의장이 18명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청년·직능별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 여력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실제로 제18기부터 제22기까지의 부의장 구성 현황을 보면 여성 부의장은 0~1명, 청년 부의장은 최대 1명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여성 부의장이 전체 부의장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한 취지와도 다소 괴리가 있음.

특히 일반 자문위원 단계에서는 여성 및 청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되고 있음에도 고위급 의장단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의 균형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부의장 제도는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대·성별·직능·해외동포사회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의견을 민주평통 운영에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제도적 통로로서의 역할 수행이 요구됨.

따라서 민주평통은 행정구역 개편 등 변화하는 환경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지향하는 지역·직능·세대·성별 간 균형 있는 대표성 확보

라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의장 구성 기준을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 반복적 예산 증·감 조정 최소화 필요

민주평통은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동일 세목에 대한 감액과 증액을 단기간 내 반복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례 1: 세목조정 세부내역>과 같이 민주평통은 국내·해외 출범회의 임차료(210-07) 예산을 감액하여 일반용역비(210-14) 부족분을 충당한 이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임차료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일반수용비(210-01)를 감액하여 증액하였음. 이후 해당 임차료 예산을 다시 감액하여 다른 내역사업의 임차료 부족분 충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동일 세목에 대한 감액과 증액을 반복하였음.

이는 당초 예산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과 집행 계획 수립의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 사례 1: 세목조정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br>(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br>사유                |
|------------------|--------------------------------|------------|----|---------------------------------------|------------|-----------------------------|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br>내역사업명     | 목-세목<br>코드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br>내역사업명            | 목-세목<br>코드 |                             |
| 세목조정<br>(7.18.)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7     | 69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14     | 국내 출범회의<br>일반용역비<br>부족분 충당  |
| 세목조정<br>(11.19.)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1     | 15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7     | 국내·해외<br>출범회의 임차료<br>부족분 충당 |
| 내역조정<br>(12.24.)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7     | 5  | 자문회의 운영<br>(300)-<br>정책건의·법정위<br>원회운영 | 210-07     | 상임위원회<br>임차료<br>부족분 충당      |

자료: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다음으로 <사례 2: 세목조정 세부내역>을 보면, 민주평통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일반수용비(210-01) 총 6,300만 원을 여러 차례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과 이틀 뒤인 12월 26일에는 국외여비(220-02) 및 임차료(210-07)를 감액하여 일반수용비(210-01)에 다시 4,800만 원을 증액하였음. 이처럼 동일 세목에 대한 상반된 조정이 단기간 내 반복된 것은 향후 소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적인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였음을 보여줌.

## < 사례 2: 세목조정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br>(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br>사유                       |
|------------------|-------------------------------|------------|----|--------------------------------------|------------|------------------------------------|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br>내역사업명    | 목-세목<br>코드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br>내역사업명           | 목-세목<br>코드 |                                    |
| 세목조정<br>(11.19.)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1     | 15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7     | 국내·해외<br>출범회의 임차료<br>부족분 충당        |
| 내역조정<br>(12.22.)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1     | 15 | 자문회의 운영<br>(300)<br>자문회의 구성          | 210-01     | 자문회의 구성<br>일반수용비<br>부족분 충당         |
| 내역조정<br>(12.24.)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1     | 30 | 자문회의 운영<br>(300)<br>정책건의·법정위원<br>회운영 | 210-01     | 상임위원회<br>일반수용비<br>부족분 충당           |
| 세목조정<br>(12.24.)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1     | 3  | 자문회의 운영<br>(300)<br>정책건의·법정위원<br>회운영 | 210-07     | 자문회의 구성<br>임차료 부족분<br>충당           |
| 자체전용<br>(12.26.)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20-01     | 30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1     | 출범회의 및<br>상임위원회<br>일반수용비<br>부족분 충당 |
| 세목조정<br>(12.26.)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7     | 18 | 자문회의 운영<br>(300)<br>국내·해외출범회의        | 210-01     | 해외출범회의<br>일반수용비<br>부족분 충당          |

자료: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예산의 이·전용 및 세목 조정은 사업 여건 변화 등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 그럼에도 위 사례와 같이 단기간 내 동일 세목에 대해 수천만 원 규모의 감액과 증액이 반복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세목별 소요 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집행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소요 전망 및 자원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민주당은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별·세목별 소요를 보다 면밀히 산정하고, 연간 집행계획에 기반한 체계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전용 및 세목 조정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적인 증감 조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 취지와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동일 물품의 부서별 개별 구매로 인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해

민주평통은 2025년 12월 자문위원 및 내방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를 총 4건에 걸쳐 제작·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5,910만 원을 집행하였음.

<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 제작·구입 현황 >

(단위: 원, 개)

| 예산<br>과목        | 건명                                | 발주일        | 집행<br>금액   | 집행<br>일자   | 단가                                 | 구입<br>수량                          | 계약<br>방식                           | 계약<br>자 |
|-----------------|-----------------------------------|------------|------------|------------|------------------------------------|-----------------------------------|------------------------------------|---------|
| 1031-300-210-01 | 제22기<br>자문위원<br>지급용 배지<br>제작      | 2025-08-28 | 39,100,000 | 2025-12-23 | 일반배지<br>: 1,900<br>자석배지<br>: 3,300 | 일반배지:<br>14,500<br>자석배지:<br>3,500 | 수의계약                               | A       |
| 1111-250-210-01 | 내방자문위원<br>지급용 배지<br>제작<br>(사업총괄과) | 2025-12-24 | 8,000,000  | 2025-12-29 | 일반배지<br>: 2,200<br>자석배지<br>: 3,300 | 일반배지:<br>2,200<br>자석배지:<br>958    | 일반지출<br>(계약서<br>생략 <sup>7)</sup> ) |         |
|                 | 내방자문위원<br>지급용 배지<br>제작<br>(미주지역과) | 2025-12-26 | 6,000,000  | 2025-12-29 | 일반배지<br>: 2,200<br>자석배지<br>: 3,300 | 일반배지:<br>1,900<br>자석배지:<br>552    | 일반지출<br>(계약서<br>생략)                |         |
|                 | 내방자문위원<br>지급용 배지<br>제작<br>(남부지역과) | 2025-12-24 | 6,000,000  | 2025-12-29 | 일반배지<br>: 2,200<br>자석배지<br>: 3,300 | 일반배지:<br>1,900<br>자석배지:<br>552    | 일반지출<br>(계약서<br>생략)                |         |
| 합계              |                                   |            | 59,100,000 | -          | -                                  | 일반배지:<br>20,500<br>자석배지:<br>5,562 | -                                  | -       |

자료: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동일한 규격의 일반배지에 대해 2025년 12월 23일 집행한 제22

-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호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는 개당 1,900원으로 구매한 반면, 사업총괄과·미주지역과·남부지역과에서 각각 집행한 내방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는 개당 2,200원으로 구매하여 개당 300원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일반배지는 1만개 이상 대량 발주하는 경우에만 개당 1,900원의 단가 적용이 가능하며, 내방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는 발주수량이 적어 개당 2,200원의 단가가 적용되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동일·유사 물품에 대한 기관 차원의 수요를 사전에 종합·조정하지 않고 부서별로 개별 구매를 실시함에 따라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등 예산 집행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내방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는 사업총괄과, 미주지역과 및 남부지역과가 불과 며칠 간격으로 각각 별도 구매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사전 수요조정과 통합 구매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그 결과 일반배지 6,000개에 대하여 개당 3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총 18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었음.

더욱이 이와 유사한 단가 차이에 따른 비효율적인 구매 사례는 제21기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 구매 과정에서도 발생한 바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제21기 자문위원 지급용 배지 제작 현황>

(단위: 원, 개)

| 예산<br>과목        | 건명                              | 집행<br>금액   | 집행<br>일자    | 단가                                 | 구입수량                                | 계약체결<br>방식          | 계약자 |
|-----------------|---------------------------------|------------|-------------|------------------------------------|-------------------------------------|---------------------|-----|
| 1031-300-210-01 | 제21기<br>자문위원<br>지급용 배지<br>제작 의뢰 | 39,920,000 | 2023.9.6.   | 일반배지:<br>1,550원<br>자석배지:<br>2,520원 | 일반배지:<br>16,000개<br>자석배지:<br>6,000개 | 수의계약                | A   |
| 1031-300-210-01 | 2차 위촉<br>자문위원<br>배지             | 2,000,000  | 2023.12.27. | 일반배지:<br>1,650원<br>자석배지:<br>2,850원 | 일반배지:<br>1,100개<br>자석배지:<br>65개     | 일반지출<br>(계약서<br>생략) |     |

자료: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는 동일·유사 물품에 대한 기관 내 수요를 사전에 종합하여 통합 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럼에도 민주평통은 동일한 배지를 각 부서별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주·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동일 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단가가 적용되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였음.

이는 단순한 개별 구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연간 물품 수요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구매 계획을 조정하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줌.

따라서 민주평통은 향후 자문위원 지급 물품 등 동일·유사 물품에 대해서는 부서별 수요를 사전에 취합하여 통합 구매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절감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 기관 차원의  
일괄 발주 방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음.

## 나.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1000-1032 단위사업)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변화관리 워크숍, 성과관리, 제안제도 등을 통해 발전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행정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3,700만원 모두 집행되었음. 세부 집행내역은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에 3,100만원, 제안제도 운영 300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300만원 등임.

### < 2025년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집행률<br>(%)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input type="checkbox"/> 행정효율성<br>증진 및 능력개발 | 37  | 37 | -         | 37   | 37  | 0   | 10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단위사업의 최근 4년간 추진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 < 최근 4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추진 실적 >

| 연 도   | 사업 추진 현황                                                                                                                              |
|-------|---------------------------------------------------------------------------------------------------------------------------------------|
| 2022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1회</li> <li>○ 제안제도 운영: 1회</li> <li>○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li> </ul> |
| 20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li> <li>○ 제안제도 운영: 1회</li> <li>○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li> </ul> |
| 202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li> <li>○ 제안제도 운영: 1회</li> <li>○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li> </ul> |
| 202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처 변화관리 워크숍: 2회</li> <li>○ 제안제도 운영: 1회</li> <li>○ 재정성과관리 운영: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1회)</li> </ul>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다. 정보화사업 추진(1000-1033 단위사업)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와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 업무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4억 5,100만원 중 4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4,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정보화 사업 추진 | 451 | 451 | -         | 451  | 405 | 46  | 89.8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집행내역은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7,2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억 6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백신프로그램 및 내PC지키미 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원, 설문조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1,400만원이 집행되었음.

### < 2025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세부내역                  | 예산과목            | 예산액 | 집행액 | 차액 | 사유                |
|-----------------------|-----------------|-----|-----|----|-------------------|
| □ 정보화 사업 추진           |                 | 451 | 405 | 46 | -                 |
| ○ 행정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구입 | 자산취득비 (430-01목) | 13  | 13  | -  | -                 |
| ○ 설문조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 자산취득비 (430-01목) | 14  | 14  | -  | 집행잔액              |
|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관리용역비 (210-15목) | 190 | 172 | 24 | 낙찰차액<br>및<br>집행잔액 |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관리용역비 (210-15목) | 234 | 206 | 22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라.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2025년도 ‘사무처 인건비’(1100-1101 단위사업) 예산액은 71억 2,700만원 이고,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650만원을 전용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71억 3,300만원으로, 이 중 96.3%인 68억 7,1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6,200만원은 불용됨.

### < 2025년도 사무처 인건비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예산확정 후 증감액   |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이용]<br>(전용) | <세목조정><br>{내역변경} |          |       |     |                   |
| □ 인건비 | 7,127 | 7,127 | 6.5          | -                | 7,133    | 6,871 | 262 | 96.3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2025년도 사무처 인건비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목-세목별  |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 인건비  |       | 7,127 | 7,127 | -          | 6.5       | -   | 7,133    | 6,871 | -          | 262 |
| 110-01 | 보수    | 6,786 | 6,786 | -          | △2.5      | -   | 6,783    | 6,523 | -          | 260 |
| 110-02 | 기타직보수 | 290   | 290   | -          | 9         | -   | 299      | 298   | -          | 1   |
| 110-05 | 연가보상비 | 51    | 51    | -          | -         | -   | 51       | 50    | -          | 1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 12월 말 기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공무원 정원은 80명 이고, 현원은 80명임.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원·현원 현황 >

(2025.12.31. 기준)

| 구분 | 계  | 정무직<br>(차관) | 고위<br>공무원 | 3급 | 4급 | 5급 | 6급이하 |
|----|----|-------------|-----------|----|----|----|------|
| 정원 | 80 | 1           | 3         | 3  | 12 | 21 | 40   |
| 현원 | 80 | 1           | 2         | 3  | 12 | 22 | 4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1111-200-2002)의 특근매식비(210-05)에서 인건비 직급상향분(6급→5급, 1명) 급여 충당을 위해 650만원을 자체전용('25. 8.13.)한 바,

최근 4년간의 결산 내역을 보면, 기본경비에서 매년 약 600만원을 전용하여 직급상향분의 보수 부족분으로 충당하고 있음.

### < 최근 4년간 인건비(1101-100)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 연도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br>현액(B) | 집행액<br>(C)<br>[실집행액] | 집행률<br>(C/A) | 집행률<br>(C/B) | 다음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             |     |
| 2022 | 6,796 | 6,786 | -          | 6         | -   | 6,792       | 6,270                | 92.4         | 92.3         | -           | 522 |
| 2023 | 6,948 | 6,948 | -          | 6         | -   | 6,954       | 6,185                | 89.0         | 89.0         | -           | 769 |
| 2024 | 7,082 | 7,082 | -          | 6         | -   | 7,088       | 6,463                | 91.3         | 91.3         | -           | 625 |
| 2025 | 7,127 | 7,127 | -          | 6.5       | -   | 7,133       | 6,871                | 96.3         | 96.3         | -           | 262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의도적 절감<sup>18)</sup>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을 자율항목에 속하는 인력증원 등에 전용할 수 있는 바,

사무처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통한 예산 절감으로 직급상향 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18) 의도적 절감: 시행기관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로 절감한 재원을 말함.

## 마.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

‘기본경비’(1100-1111 단위사업)는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로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비대상 기본경비 및 전산운영 경비로 이루어져 있음.

2025년도 예산액은 19억 1,500만원이고, 총액인건비 직급상향분 증당을 위해 인건비(1101-100)로의 전용으로 65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19억 800만원이며, 이 중 98.1%인 18억 7,200만원이 집행되고 3,6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 행 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기본경비                            | 1,915 | 1,915 | △6.5      | 1,908    | 1,872 | 36  | 98.1              |
| ○ 총액인건비<br>대상 기본경비<br>(1111-200)  | 384   | 384   | △6.5      | 377      | 359   | 18  | 95.2              |
| ○ 총액인건비<br>비대상 기본경비<br>(1111-250) | 1,349 | 1,349 | ±61       | 1,349    | 1,333 | 16  | 98.8              |
| ○ 전산운영경비<br>(1111-251)            | 182   | 182   | ±3.2      | 182      | 180   | 2   | 98.9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 부적정

민주평통은 2025년 기타운영비(210-16) 예산을 전년도 5,700만원에서 7,390만원으로 1,690만 원(29.6%)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2025년 기타운영비(210-16) 예산 증감 현황 >

(단위: 천원)

| 내역                           | 2024 예산액 | 2025 예산액 | 증감     |
|------------------------------|----------|----------|--------|
| [210-16]기타운영비                | 57,000   | 73,900   | 16,900 |
| 1. 기관운영지원                    | 57,000   | 73,900   | 16,900 |
| 가. 기관운영경비                    | 57,000   | 73,900   | 16,900 |
| 1) 우수직원 등 격려금                | 7,000    | 7,000    | -      |
| 2) 비서실 운영비                   | 16,800   | 16,800   | -      |
| 3) 자문위원, 사무처 직원 애경사 지원 화환비 등 | 33,100   | 50,000   | 16,900 |
| 4) 국립묘지 참배용 화환비              | 100      | 100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그런데 민주평통은 2025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기타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같은 해 12월 29일 해당 세목 예산 2,3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210-01) 부족분 충당 재원으로 충당하였음.

< 2025년 세목조정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br>(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          | 목-세목<br>코드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          | 목-세목<br>코드 |                        |
| 세목조정<br>(12.29.) | 총액인건비<br>비대상<br>기본경비(250) | 210-16     | 23 | 총액인건비<br>비대상<br>기본경비(250) | 210-01     | 기관운영지원<br>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제21기 자문회의 임기 종료(2025. 8. 31.) 이후 제 22기 자문회의 출범(2025. 11. 1.)까지 약 2개월간 자문위원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자문위원 애경사 화환비 집행이 감소하였고, 아울러 사무처장 공석 기간(2025. 7. 11.~8. 14.) 동안 사무처장 명의의 화환 지급도 줄어들면서 실제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하였음.

### < 최근 4년간 기타운영비(210-16) 집행현황 >

(단위: 천원)

| 내역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예산액    | 집행액         |
| [210-16]기타운영비                         | 48,000 | 45,020      | 54,000 | 54,300      | 57,000 | 56,505      | 73,900 | 49,357      |
| 1.기타운영지원                              | 48,000 | 45,020      | 54,000 | 54,300      | 57,000 | 56,505      | 73,900 | 49,357      |
| 가. 기타운영지원                             | 48,000 | 45,020      | 54,000 | 54,300      | 57,000 | 56,505      | 73,900 | 49,357      |
| 1) 우수직원등<br>격려금                       | 7,000  | 1,620       | 7,000  | 4,240       | 7,000  | 1,815       | 7,000  | 4,450       |
| 2) 비서실 운영비                            | 8,400  | 8,400       | 14,400 | 14,400      | 16,800 | 11,900      | 16,800 | 15,106      |
| 3) 자문위원,<br>사무처 직원<br>애경사 지원<br>화환비 등 | 32,500 | 자문위원 27,060 | 32,500 | 자문위원 26,470 | 33,100 | 자문위원 34,220 | 50,000 | 자문위원 22,701 |
|                                       |        | 사무처직원 7,940 |        | 사무처직원 9,190 |        | 사무처직원 8,250 |        | 사무처직원 6,400 |
|                                       |        | 기타 -        |        | 기타 -        |        | 기타 -        |        | 기타 370      |
|                                       |        | 소계 35,000   |        | 소계 35,660   |        | 소계 42,470   |        | 소계 29,471   |
| 4) 국립묘지<br>참배용 화환비                    | 100    | -           | 100    | -           | 100    | 320         | 100    | 33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사무처 직원: 행정실장 및 공무원 포함

그러나 최근 3년간(2022~2024년) 기타운영비의 실제 집행액은 4,502만원에서 5,650만원 수준으로 매년 편성예산을 하회하였음에도, 민주평통은 2025년 기타운영비를 전년 대비 29.6%(1,690만원) 증액하여 7,39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특히 증액분 전액은 '자문위원·사무처 직원 애경사 지원 화환비 등'에 반영되면서 해당 예산은 2024년 3,310만원에서 2025년 5,000만원으로 51.1%(1,690만원) 증액되었으나, 최근 3년간 해당 예산의 실제 집행액은 최대 4,247만원, 평균 약 3,770만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집행실적에 비추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더욱이 2025년 편성된 기타운영비 중 2,300만원은 연말 일반수용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감액 조정된 점을 고려할 때,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제 소요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정밀한 수요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애경사 화환비와 같은 기관운영성 경비는 매년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상적 경비인 만큼, 과거 집행실적과 향후 소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민주평통은 향후 애경사 화환비 등 정형화된 운영경비를 편성할 때에는 관행적인 증액을 지양하고, 최근 수년간의 집행 추이와 집행률을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실제 교육과정과 불일치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반복적 전용 지양 필요

민주평통은 2024년까지 과장급 공무원 1명을 대상으로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에 파견하여 국내장기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경비는 일반수용비(210-01) 예산으로 집행하여 왔음.

### < 최근 4년간 과장급 국내장기교육훈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 훈련인원 | 직위 | 과장급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br>[일반수용비(210-01)] |     | 과장급 해외연수 지원비<br>[국외여비(220-01)] |               | 과정명         |
|------|------|----|------------------------------------|-----|--------------------------------|---------------|-------------|
|      |      |    | 편성액                                | 집행액 | 편성액                            | 집행액           |             |
| 2022 | 1    | 과장 | 22                                 | 18  | 미편성                            | 0             | 세종국가전략 연수과정 |
| 2023 | 1    | 과장 | 22                                 | 25  |                                | 0             |             |
| 2024 | 1    | 과장 | 22                                 | 28  |                                | 0             |             |
| 2025 | 1    | 과장 | 28                                 | 0   |                                | 10<br>(전용 조달) | 통일정책지도자과정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그런데 민주평통은 2025년 과장급 국내장기위탁교육훈련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 예산 1,000만 원을 국외여비(220-02)로 전용하여 해외연수 지원비로 집행하였음.

## < 이 · 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br>(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br>내역사업명        | 목-세목<br>코드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br>내역사업명        | 목-세목<br>코드 |                             |
| 전용<br>(5.14.) | 총액인건비<br>비대상<br>기본경비(250)<br>교육훈련 | 210-01     | 3  | 총액인건비<br>비대상<br>기본경비(250)<br>교육훈련 | 220-02     | 과장급<br>국내장기위탁훈련<br>해외연수비 충당 |
| 전용<br>(8.11.) | 총액인건비<br>비대상<br>기본경비(250)<br>교육훈련 | 210-01     | 7  | 총액인건비<br>비대상<br>기본경비(250)<br>교육훈련 | 220-02     | 과장급<br>국내장기위탁훈련<br>해외연수비 충당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2025년부터 기존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이 폐지됨에 따라 과장급 위탁교육훈련 과정을 통일정책지도자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해당 과정은 위탁교육훈련비(210-01)는 소요되지 않고 해외연수 지원비(220-02)만 필요하여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전용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위의 설명에 의하면 민주평통은 2025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해 일반수용비(210-01)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국외여비(220-02)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도 다시 일반수용비(210-01) 500만원만 편성하고 국외여비(220-02)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2026년 과장급 국내장기교육훈련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 편성내역                               | 산출근거          | 금액 |
|-----------------|------------------------------------|---------------|----|
| 1111-250-210-01 | ○ 국내 위탁교육 훈련비<br>- 국내 장기 위탁교육(과장급) | 5,000,000원*1명 | 5  |
| 1111-250-220-01 | -                                  | -             | 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예산의 전용은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추가 소요가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임에도, 민주평통은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소요 비목의 변경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2026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예산 전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따라서 민주평통은 향후 교육훈련 과정별 소요 경비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집행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7년도 예산안부터는 통일정책지도자과정의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국외여비(220-02) 등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1100-1131 단위사업)

### 1) 개 요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은 국내·해외 지역조직의 평화통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위원 역량강화’,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단위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17억 7,200만원이고, 이 중 98.3%인 214억 1,2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6,0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지원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 지역협의회<br>활동지원                    | 21,772 | 21,772 | -          | -        | 21,772   | 21,412 | 360 | 98.3              |
| ○ 자 문 위 원<br>역 량 강 화<br>(1131-300) | 2,359  | 2,359  | -          | △3       | 2,356    | 2,238  | 118 | 95.0              |
| ○ 지역협의회<br>운 영<br>(1131-301)       | 13,239 | 13,239 | -          | ±15      | 13,239   | 13,034 | 205 | 98.5              |
| ○ 지역협의회<br>활동추진<br>(1131-302)      | 6,174  | 6,174  | -          | 3        | 6,177    | 6,140  | 37  | 99.4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 세부사업별 검토

### 가) 자문위원 역량강화(1131-300 세부사업)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은 자문위원의 정책건의 역량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지역통일 준비 역량강화’, ‘유공자문위원 포상’, ‘기관지 제작’,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예산현액은 23억 5,600원이며, 이 중 95.0%인 22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8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자문위원 역량<br>강화   | 2,359 | 2,359 | △3        | 2,356    | 2,238 | 118 | 95.0              |
| · 청년·여성위원<br>역량지원 | 591   | 591   | 3         | 594      | 565   | 29  | 95.1              |
| · 지역통일준비<br>역량강화  | 659   | 659   | △6.5      | 653      | 634   | 19  | 97.1              |
| · 유공자문위원<br>포상    | 99    | 99    | ±1        | 99       | 99    | -   | 100.0             |
| · 기관지 제작          | 649   | 649   | 21        | 670      | 630   | 40  | 94.0              |
| · 평화통일자료 지원       | 361   | 361   | △21       | 340      | 310   | 30  | 91.2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세부사업의 비목별 주요 집행내역은 운영비(210목) 16억 9,300만원, 민간경상보조(320-01목) 1억 8,600만원 등임.

### < 2025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비목별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목·세목별         | 예산액   |       | 전년도<br>이월액 | 이·전용<br>등 | 예비비 | 예산<br>현액 | 집행액   | 차년도<br>이월액 | 불용액 |
|---------------|-------|-------|------------|-----------|-----|----------|-------|------------|-----|
|               | 예산    | 추경    |            |           |     |          |       |            |     |
| ○ 자문위원역량강화    | 2,359 | 2,359 | -          | △3        | -   | 2,356    | 2,238 | -          | 118 |
| 110-03 상용임금   | 93    | 93    | -          | -         | -   | 93       | 93    | -          | -   |
| 210 운영비       | 1,785 | 1,785 | -          | ±20       | -   | 1,785    | 1,693 | -          | 92  |
| 220 여비        | 219   | 219   | -          | △3        | -   | 216      | 192   | -          | 24  |
| 240-01 사업추진비  | 24    | 24    | -          | -         | -   | 24       | 24    | -          | -   |
| 310-03 포상금    | 30    | 30    | -          | -         | -   | 30       | 30    | -          | -   |
| 320-01 민간경상보조 | 186   | 186   | -          | -         | -   | 186      | 186   | -          | -   |
| 320-09 고용부담금  | 18    | 18    | -          | -         | -   | 18       | 16    | -          | 2   |
| 430-01 자산취득비  | 4     | 4     | -          | -         | -   | 4        | 4     |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최근 3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추진 현황 >

| 연 도   | 사업추진 현황                                                                                                                                                                                                                                                                                                                                                                                                                                                                                                                                                                                                                                                                                                                         |
|-------|---------------------------------------------------------------------------------------------------------------------------------------------------------------------------------------------------------------------------------------------------------------------------------------------------------------------------------------------------------------------------------------------------------------------------------------------------------------------------------------------------------------------------------------------------------------------------------------------------------------------------------------------------------------------------------------------------------------------------------|
| 20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운영위원회 등 여성위원 활동 : 32회</li> <li>- 청년운영위원회 등 청년위원 활동 : 16회</li> <li>-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li> <li>-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18회</li> </ul> </li> <li>○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6건</li> <li>-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20회</li> </ul> </li> <li>○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3개</li> <li>○ 기관지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 발행 : 12회/각 23,000부</li> <li>-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69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li> </ul> </li> <li>○ 평화통일자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자료 제작 : 11편</li> <li>- 리플릿(22,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원 인건비 등</li> </ul> </li> </ul> |

| 연 도   | 사업추진 현황                                                                                                                                                                                                                                                                                                                                                                                                                                                                                                                                                                                                                                                                                                                       |
|-------|-------------------------------------------------------------------------------------------------------------------------------------------------------------------------------------------------------------------------------------------------------------------------------------------------------------------------------------------------------------------------------------------------------------------------------------------------------------------------------------------------------------------------------------------------------------------------------------------------------------------------------------------------------------------------------------------------------------------------------|
| 202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운영위원회 등 여성위원 활동 : 5회</li> <li>- 청년운영위원회 등 청년위원 활동 : 12회</li> <li>-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li> <li>- 해외지역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활동 : 12회</li> </ul> </li> <li>○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2건</li> <li>-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부의장·협의회장 워크숍 등 : 19회</li> </ul> </li> <li>○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5개</li> <li>○ 기관지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 발행 : 6회/각 24,500부</li> <li>- 민주평통 블로그 운영 : 545개 콘텐츠 게재 및 뉴스레터 제작 24회</li> </ul> </li> <li>○ 평화통일자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자료 제작 : 27편</li> <li>- 리플릿(10,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원 인건비 등</li> </ul> </li> </ul> |
| 202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운영위원회 등 여성위원 활동 : 4회</li> <li>- 청년운영위원회 등 청년위원 활동 : 4회</li> <li>- 세계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2회</li> </ul> </li> <li>○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통일콘텐츠(온라인 지식서비스) : 11건</li> <li>- 간부위원 합동워크숍 및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 20회</li> </ul> </li> <li>○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 : 45개</li> <li>○ 기관지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 발행 : 6회/각 23,000부</li> <li>- 민주평통 블로그 및 SNS운영(951개 콘텐츠 게재), 뉴스레터 제작(14회)</li> </ul> </li> <li>○ 평화통일자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자료 제작 : 25회</li> <li>- 리플릿(42,000부) 제작 및 발송, 공무원 인건비 등</li> </ul> </li> </ul>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1)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내역사업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은 미래 통일시대 준비의 중요한 축인 청년·여성위원의 통일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은 5억 9,128만원, 예산현액은 5억 9,541만원이며 이중 95.1%인 5억 6,537만원을 집행하고 2,904만원은 불용하였음.

#### < 2025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이·전<br>등 | 예산<br>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591 | 591 | 3        | 594      | 565 | 29  | 95.1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사업은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과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5년도에는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 4회,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4회,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2회를 각각 실시하였음.

## < 2025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실적 >

(단위: 회, 백만원)

| 사 업 명                 |                  | 개최 횟수 | 집행액 |
|-----------------------|------------------|-------|-----|
| 국내<br>청년위원<br>역량지원    | ▪ 청년운영위원회        | 2     | 12  |
|                       | ▪ 국내 청년분과위원장 워크숍 | 1     | 50  |
|                       | ▪ 청년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 1     | 135 |
|                       | 계                | 4     | 197 |
| 국내<br>여성위원<br>역량지원    | ▪ 여성운영위원회        | 2     | 9   |
|                       | ▪ 국내 여성분과위원장 워크숍 | 1     | 51  |
|                       | ▪ 여성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 1     | 66  |
|                       | 계                | 4     | 126 |
| 해외<br>청년·여성위원<br>역량지원 | ▪ 해외 청년위원 컨퍼런스   | 1     | 135 |
|                       | ▪ 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 1     | 107 |
|                       | 계                | 2     | 242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집행액에는 사업비, 수용비, 여비 등 모두 포함)

### (2)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내역사업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는 지역통일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별·대상별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여 통일준비를 위한 실천과제 발굴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온라인 통일 콘텐츠 제작 및 연수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자문위원 연수에 필요한 영상 및 교재를 직접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있음.

< 2025년도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주요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집행액 |
|-----------------------------------------|-----|------|-----|
| o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11편                      | 110 | 110  | 100 |
| o 자문위원 연수 20회<br>(간부위원 2회, 국내 자문위원 18회) | 548 | 541  | 534 |
| o 연수자료집 제작 500부                         |     |      |     |
| 합계                                      | 658 | 651  | 634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연도별 온라인 지식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및 2025년 조회실적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도별 온라인 지식서비스 예산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예산   | 180      | 180       | 180       | 139       | 110       |
| 집행   | 169      | 172       | 177       | 136       | 100*      |
| 제작편수 | 16편      | 16편       | 16편       | 12편       | 11편       |
| 제작단가 | 10.6/편당  | 10.8/편당   | 11.1/편당   | 11.2/편당   | 9.1/편당    |
| 조회수  | 7,568/편당 | 14,263/편당 | 29,931/편당 | 25,727/편당 | 15,731/편당 |

\* 온라인지식서비스 제작 용역 낙찰 차액(10,600천원) 발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2025년 온라인 지식서비스 조회실적 >

(단위: 회)

| 연번           | 제 목                               | 조 회 수<br>(‘26.1.2기준) |
|--------------|-----------------------------------|----------------------|
| 1            | 러우전쟁과 트럼프식 해법, 우리의 대응은?           | 4,592                |
| 2            | 보이지 않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 4,780                |
| 3            | ‘남남갈등’ 우리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5,076                |
| 4            | 글로벌 AI시대 경쟁과 통일, 우리의 생존전략은?       | 10,067               |
| 5            | 북한에도 광고가 있을까? 북한 주민의 소비생활과 광고 효과  | 10,732               |
| 6            | 분단극복과 사회통합의 길, 대한민국만 가진 권위는?      | 5,322                |
| 7            |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 5,945                |
| 8            | 새 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방안은?       | 30,951               |
| 9            | 쉽고 재미있는 평양학개론                     | 63,904               |
| 10           |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 사회의 변화            | 19,986               |
| 11           | 평화통일 실천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방향은?          | 11,694               |
| <b>총 조회수</b> | <b>173,049</b>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3) 기관지 제작 및 평화통일자료 지원

내역사업 ‘기관지 제작’ 및 ‘평화통일자료 지원’은 자문위원에게 대북·통일 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통일 발간’,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영상자료 제작’,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등으로 이루어짐.

#### < 2024·2025년도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및 통일자료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        | 사업추진 현황                                                                                        | 2024년<br>집행액 | 2025년<br>집행액 |
|-----------|--------|------------------------------------------------------------------------------------------------|--------------|--------------|
| 기관지<br>제작 | 「평화통일」 | o 발간횟수 : 6회 (격월)<br>o 발간부수 : 매회 23,000부<br>(모바일 「평화통일」 병행)<br>o 배 부 처 : 자문위원 및 유관기관 ·<br>관련 단체 | 442          | 427          |
|           | 블로그    | o 발행주기 : 상시<br>o 콘텐츠 수 : 월 20~30개<br>o 대국민 공개 서비스(네이버 블로그)                                     | 242          | 202          |
| 평화통일자료 지원 |        | o 영상자료 제작 : 25편<br>o ‘22기 민주평통 안내서’ 소책자 제작 등<br>o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 서비스                              | 386          | 306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전자적 배포수단 활용을 통한 기관지 발송비 절감 방안 마련 필요

민주평통은 2025년 기관지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19일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예산 1,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음.

< 세목조정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br>(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  | 목-세목<br>코드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  | 목-세목<br>코드 |                           |
| 내역조정<br>(12.19.) | 자문위원<br>역량강화(300) | 210-02     | 2  | 자문위원<br>역량강화(300) | 210-02     | 기관지 제작<br>공공요금 및 제세<br>부족 |
| 세목조정<br>(12.19.) | 자문위원<br>역량강화(300) | 210-01     | 11 | 자문위원<br>역량강화(300) | 210-02     | 기관지 제작<br>공공요금 및 제세<br>부족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현재 민주평통은 기관지 「평화통일」을 종이 인쇄물 형태로 제작하여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격월간 총 2만 3천부를 발간·배포 하였음.

< 최근 4년간 기관지 발간물량 >

(단위: 권)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발간물량 | 23,000 | 23,000 | 24,500 | 23,00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러나 이러한 발간·배포 방식은 인쇄비 외에도 발송작업비 약 1,800만원, 우편 발송비 약 1억 3,800만원 등 상당한 부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구조임.

특히 발송 물량의 대부분이 국내·해외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우편이나 웹진 등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 수요가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음에도 기존의 종이 발송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우편 발송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최근 4년간 기관지 발송처 현황<sup>19)</sup> >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발송처 | 총 23,000부<br>○ 국내<br>- 자문위원 16,100부<br>-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등 2,810부<br>○ 해외<br>- 자문위원 3,900부<br>- 외교 공관 190부 | 총 23,000부<br>○ 국내<br>- 자문위원 16,100부<br>-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등 2,810부<br>○ 해외<br>- 자문위원 3,900부<br>- 외교 공관 190부 | 총 24,500부<br>○ 국내<br>- 자문위원 18,000부<br>-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등 2,310부<br>○ 해외<br>- 자문위원 4,050부<br>- 외교 공관 140부 | 총 23,000부<br>○ 국내<br>- 자문위원 18,000부<br>- 지자체, 도서관, 유관기관 등 950부<br>○ 해외<br>- 자문위원 4,050부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웹진(Webzine)과 종이 인쇄물 방식의 발간 형태를 비교해 보

19) 2024년 및 2025년 발송처 전체 리스트

| 구 분             |       | 대 상                         | 수량(부)  |        |
|-----------------|-------|-----------------------------|--------|--------|
|                 |       |                             | 2024년  | 2025년  |
|                 |       | <총계>                        | 24,500 | 23,000 |
| ① 민주평통          | <소계>  |                             | 23,000 | 22,400 |
|                 | 자문위원  | 국내 자문위원                     | 18,000 | 18,000 |
|                 |       | 해외 자문위원                     | 4,050  | 40,50  |
|                 | 국내 조직 |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 750    | 250    |
|                 | 사무처   | 직원, 방문자 비치용                 | 100    | 100    |
|                 |       | 보관·홍보·신청독자 등                | 100    | -      |
| ② 대학 및 국·공립 도서관 |       | 대학교, 도서관                    | 450    | 150    |
| ③ 주요 기관·단체, 전문가 |       | 통일관련 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전문가 등 | 310    | 70     |
| ④ 외교 공관         |       | 재외 한국공관                     | 140    | -      |
| ⑤ 지방자치단체        |       | 시·도 및 시·군·구(단체장, 자치행정과 등)   | 270    | 250    |
| ⑥ 정부 주요 기관      |       | 대통령실, 행정부, 사법부 등            | 150    | 50     |
| ⑦ 주요 언론사        |       | 중앙·지방 언론사 통일담당 기자           | 130    | 30     |
| ⑧ 국회 및 정당       |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당              | 50     | 5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면, 웹진은 인쇄비·제본비·우편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배포와 검색·보관이 가능하며, 발행 이후에도 내용의 수정·보완이 용이한 장점이 있음.

반면 종이 인쇄물은 인쇄 및 우편 발송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배포에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발행 이후 내용의 수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 웹진 및 종이 인쇄물 방식 비교 >

| 구분       | 웹진(Webzine) 방식                                           | 종이 인쇄물 방식                                    |
|----------|----------------------------------------------------------|----------------------------------------------|
| 형식       | ○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배포되는 디지털 콘텐츠              | ○ 종이에 인쇄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배포하는 실물 형태               |
| 비용       | ○ 발행 비용 절감 (인쇄비, 제본비, 우편 발송료 대폭 절감)                      | ○ 인쇄 및 제본 비용, 매번 상당한 발송(우편) 비용 발생            |
| 콘텐츠 형태   | ○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동영상, 오디오, 애니메이션, GIF 등)                    | ○ 텍스트와 정지 이미지(사진, 일러스트)에 한정됨                 |
| 상호작용성    | ○ 쌍방향 소통 가능 (댓글, 설문, 투표, 공유 버튼 등)                        | ○ 일방향적 정보 전달 (독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기 어려움)          |
| 접근성 및 속도 | ○ 신속한 배포(발행 즉시 전 세계 동시 접근 가능), 스마트폰/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열람 가능 | ○ 배포에 시간 소요 (인쇄, 포장, 우편 발송 기간 필요), 물리적 공간 필요 |
| 수정 및 보완  | ○ 발행 후에도 내용 수정 및 업데이트가 용이함                               | ○ 발행 후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며, 정오표 등을 별도 발송해야 함        |
| 보관 및 검색  | ○ 디지털 형태로 영구 보존 용이, 키워드 검색을 통한 과거 자료 접근이 편리함             | ○ 물리적 보관 공간 필요, 특정 내용을 찾기 위해 직접 넘겨봐야 함       |

그럼에도 민주평통은 기관지 배포를 대부분 종이 인쇄물과 우편 발송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자우편이나 웹진 등 디지털 기반의 배포 방식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음.

특히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전

자우편 등 전자적 전달수단의 활용을 확대하여 우편요금 증가 요인을 흡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민주평통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기관지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결과적으로 기관지 발송비 부족으로 연말 추가 예산 조정이 발생한 것은 기관지 운영 방식에 대한 비용 절감 노력과 중장기적 개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기관지 발간 및 배포 체계 전반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종이 인쇄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전자우편·웹진 등 디지털 기반의 저비용 배포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인쇄 형태의 기관지는 수요가 있는 대상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발송 물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나) 지역협의회 운영(1131-301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sup>20)</sup>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회의<sup>21)</sup>와 지역협의회<sup>22)</sup>의 운영비와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행정실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협의회 인건비’, ‘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직무교육’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132억 3,900만원이고, 이 중 98.5%인 130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 행 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 행 륜<br>(%) |
|------------|--------|--------|-----------|----------|--------|-----|----------------------------|
|            | 본 예산   | 추경     |           |          |        |     |                            |
| ○ 지역협의회 운영 | 13,239 | 13,239 | -         | 13,239   | 13,034 | 205 | 98.5                       |
| · 협의회 인건비  | 9,786  | 9,786  | △9        | 9,777    | 9,572  | 205 | 97.9                       |
| · 협의회 운영비  | 3,375  | 3,375  |           | 3,375    | 3,375  | -   | 100                        |
| · 협의회 직무교육 | 78     | 78     | 9         | 87       | 87     | -   | 10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 2023년 12월 31일 기준 23개(국내 18개, 해외 5개)

22)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구성, 2023년 12월 31일 기준 273개(국내 228개, 해외 45개)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최근 3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추진 현황 >

| 연 도   | 사업추진 현황                                                                                                                                               |
|-------|-------------------------------------------------------------------------------------------------------------------------------------------------------|
| 20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li> <li>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li> <li>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1회)</li> </ul>     |
| 202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li> <li>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연초 1회, 해외 분기별)</li> <li>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3월, 1회)</li> </ul> |
| 202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협의회 직원 인건비 매월 지급</li> <li>o 협의회 운영비 지급(국내 반기별, 해외 분기별)</li> <li>o 협의회 직원 직무교육 : 전국단위 개최(3월, 1회)</li> </ul>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1) 협의회 인건비·운영비

협의회 인건비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sup>23)</sup>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에 97억 8,629만원이 편성되었고, 협의회 직무교육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940만원을 감 조정한 예산현액 97억 7,689만원 중 97.9%인 95억 7,149만원이 집행되고 2억 539만원은 불용되었음.

23)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공무원 근로자(행정실장) 현황

(단위: 명)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세종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야북<br>5도 |
|-----|----|----|----|----|----|----|----|----|----|----|----|----|----|----|----|----|----|----------|
| 247 | 26 | 17 | 10 | 11 | 6  | 6  | 1  | 6  | 32 | 19 | 12 | 16 | 15 | 23 | 23 | 20 | 3  | 1        |

### < 2025년도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인건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설치기준                | 예산현액  | 집행액   | 지급기준                                    | 비 고                        |
|-------------------|---------------------|-------|-------|-----------------------------------------|----------------------------|
| 국내 지역회의<br>(18)   | 시·도·특별자치시<br>·특별자치도 | 9,786 | 9,572 | 매월 29일<br>행정실장 개인별<br>지급<br>(기본급, 수당 등) | 매월 1인당<br>200여만원<br>실급여 지급 |
| 국내 지역협의회<br>(228) | 시·군·구               |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의회 운영비는 자문회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 33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 33억 7,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 2025년도 지역회의 및 협의회 운영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지급기준                                                        |
|---------------------------|-------|-------|-------------------------------------------------------------|
| 합 계                       | 3,371 | 3,371 |                                                             |
| 국내 지역회의(18)               | 194   | 194   | 월 평균 0.9백만원 x 18개 지역회의 x 12개월                               |
| 국내 지역협의회(228)             | 1,478 | 1,478 | 월 평균 0.54백만원 x 228개 지역협의회 x 12개월                            |
| 해외 지역회의(5) ·<br>지역협의회(45) | 1,699 | 1,699 | (지역회의)분기당 855만원 × 5지역 × 4분기<br>(협의회)분기당 849만원 × 45협의회 × 4분기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해외 송금수수료(400만원) 제외)

국내 18개 지역회의에는 ‘협의회 수’를 기준으로 반기별로(연 2회) 차등 지급(평균 1,080만원)하고,

국내 228개 지역협의회에는 ‘자문위원 수’(60인 이하, 61~100인, 101~140인, 141~180인, 181인 이상)를 기준으로 반기별료(연 2회) 차등 지급(평균 648만원)함.

해외 5개 지역회의에는 기준(기본경비 130만원, 협의회당 5만원, 사무실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인건비 최대 150만원)에 따라 분기당 평균 855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해외 45개 지역협의회에는 기준(기본경비 60만원, 국가 및 도시 등급에 따라 최대 30만원, 자문위원 수에 따라 최대 20만원, 관할 지회당 40만원, 사무실 임차료 최대 100만원, 인건비 최대 150만원)에 따라 분기당 평균 849만원을 차등 지급함.

## □ 전용 시 보충성 원칙 준수 필요

민주평통은 2025년 행정실장 직무연수 경비로 국내여비(220-01)에서 총 3,8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당초 편성예산 2,548만원보다 1,338만 원 (52.5%) 초과한 규모임.

### <최근 4년간 행정실장 직무연수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연도                  | 숙박비     |          |         |          | 식비      |          |         |          | 직원 <sup>24)</sup> |         | 합계     | 장소 |
|---------------------|---------|----------|---------|----------|---------|----------|---------|----------|-------------------|---------|--------|----|
|                     | 편성액     |          | 집행액     |          | 편성액     |          | 집행액     |          | 여비                |         |        |    |
|                     | 1인<br>당 | 편성<br>총액 | 1인<br>당 | 집행<br>총액 | 1인<br>당 | 편성<br>총액 | 1인<br>당 | 집행<br>총액 | 편성<br>액           | 집행<br>액 |        |    |
| 2022                | 43      | 10,625   | 21      | 4,950    | 54      | 13,356   | 59      | 14,170   | 1,500             | 1,792   | 20,912 | 대전 |
| 2023                | 43      | 10,625   | 39      | 9,120    | 54      | 13,356   | 60      | 14,048   | 1,500             | 2,053   | 25,221 | 부산 |
| 2024                | 43      | 10,625   | 38      | 9,100    | 54      | 13,356   | 58      | 13,991   | 1,500             | 2,339   | 25,430 | 경주 |
| 2025 <sup>25)</sup> | 43      | 10,625   | 34      | 7,845    | 54      | 13,356   | 124     | 28,323   | 1,500             | 2,701   | 38,869 | 제주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4년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집행액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식비와 직원여비의 증가에 있음. 특히 식비는 당초 편성액 1,336만원 대비 2,832만원이 집행되어 약 112% 초과 집행되었으며, 1인당 식비도 당초 5만 4천원에서 실제 12만 4천원으로 약 2.3배 증가하였음.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제주 지역의 높은 물가 수준으로 인해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였으며, 숙박비는 연수원 협조를 통해 절감하였으나 식비는 현실 단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였음.

24) 민주평통 소속 공무원을 말함.

25) 2025년 행정실장 직무연수에 참석한 행정실장은 현원 248명 중 228명임.

## < 이 · 전용 등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br>(날짜)     | ~에서              |                  | 금액 | ~으로              |            | 이·전용 등 사유                       |
|----------------|------------------|------------------|----|------------------|------------|---------------------------------|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 | 목-세목<br>코드       |    | 세부사업 명<br>(사업코드) | 목-세목<br>코드 |                                 |
| 전용<br>(3.6.)   | 지역협의회<br>운영(301) | 210-02<br>210-07 | 13 | 지역협의회<br>운영(301) | 220-01     | 행정실장 직무연수<br>숙박비 및 식비 부족분<br>충당 |
| 세목조정<br>(3.6.) | 지역협의회<br>운영(301) | 210-02           | 2  | 지역협의회<br>운영(301) | 210-01     | 행정실장 직무연수<br>일반수용비<br>부족분 충당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며,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역시 전용 등 예산 변경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보충성의 원칙<sup>26)</sup>'을 규정하고 있음.

행정실장 직무연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정례사업으로서 사업 규모와 소요 경비를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함.

그럼에도 민주평통은 제주 지역 개최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업 초기 단계인 2025년 3월부터 1,300만원을 전용하여 부족 재원을 확보하였음.

26)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라. 예산집행심의회 심사기준

-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이는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이라기보다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개최 지역에 따른 비용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특히 예산 범위 내에서 개최 장소를 조정하거나 연수 프로그램 및 행사 규모를 합리화하는 등 자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우선 검토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용을 통해 부족 재원을 충당한 것은 예산 변경의 보충성 원칙에 배치되는 편의적 예산 집행으로 판단됨.

만약 민주평통의 설명과 같이 제주 지역 개최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였다면, 해당 요인을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였을 것임.

그럼에도 민주평통은 실제 소요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 과정에서 전용을 통해 부족 재원을 확보하였음.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예산 전용 제도가 예외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적인 재원 조정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으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한 사전 통제 기능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사전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반복적인 과소편성과 전용 의존은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행정실장 직무연수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

는 정례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집행 실적, 개최 지역 및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에는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전용에 의존하기보다 개최 장소의 적정성 검토, 연수 프로그램 조정, 행사 규모의 합리화 등 자체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우선 강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1131-302 세부사업)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되는 국내외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단위의 통일활동 추진에 관한 사업으로,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동 세부사업의 2025년도 본예산은 61억 7,400만원, 예산현액은 61억 7,700만원이고, 이 중 99.4%인 61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3,5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br>현액 | 집 행 액 | 불용액 | 예산현액<br>대비<br>집행률<br>(%) |
|------------------|-------|-------|-----------|----------|-------|-----|--------------------------|
|                  | 본 예산  | 추경    |           |          |       |     |                          |
|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 6,174 | 6,174 | 3         | 6,177    | 6,140 | 37  | 99.4                     |
| · 평화통일포럼         | 325   | 325   | △1        | 324      | 309   | 15  | 95.4                     |
| · 평화통일 시민교실      | 394   | 394   |           | 394      | 394   | -   | 100                      |
| · 지역통일활동 지원      | 4,523 | 4,523 | 3         | 4,526    | 4,509 | 17  | 99.6                     |
| ·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637   | 637   |           | 637      | 637   | -   | 100                      |
| ·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 201   | 201   |           | 201      | 198   | 3   | 98.5                     |
|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94    | 94    | 1         | 95       | 95    | -   | 10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최근 3년간 동 세부사업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추진 현황 >

| 연 도   | 사업추진 현황                                                                                                                                                                                                                                                                                                                                                                                                                                                                                                                                                                                                     |
|-------|-------------------------------------------------------------------------------------------------------------------------------------------------------------------------------------------------------------------------------------------------------------------------------------------------------------------------------------------------------------------------------------------------------------------------------------------------------------------------------------------------------------------------------------------------------------------------------------------------------------|
| 202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평화통일포럼 : 34회, 3,625명 참석</li> <li>○ 해외평화통일포럼 : 4회(해외포럼 3회·국제학술회의 1회), 1,174명 참석</li> <li>○ 평화통일시민교실 : 139회, 12,291명 참석</li> <li>○ 국내 평화통일활동 지원 : 122회(강연회·토론회 44회, 통일문화행사 등 78회)</li> <li>○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39,773명 참석</li> <li>○ 해외 평화통일활동 지원 : 165회, 39,508명 참석</li> <li>○ 해외 정기회의 : 3회, 5,898명 참석</li> <li>○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29회, 58,950명 참석(국내 168회, 54,773명, 해외 61회, 4,177명)</li> <li>○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14회, 1,175명 참석</li> <li>○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3회, 420명 참석</li> </ul>                                                                                 |
| 2024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평화통일포럼 : 17회, 1,703명 참석, 86백만원</li> <li>○ 해외 평화통일포럼 : 4회(해외포럼 3회·국제학술회의 1회), 730명 참석</li> <li>○ 평화통일 시민교실 : 164회, 18,849명 참석</li> <li>○ 국내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 200회(강연회·토론회 등 48회, 통일문화행사 등 48회, 공모전 등 15회, 견학·체험 등 44회, 청년·여성 등 45회), 236,448명 참석</li> <li>○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1회), 38,176명 참석</li> <li>○ 해외 지역평화통일활동 지원 : 205회, 41,851명 참석</li> <li>○ 해외 정기회의 : 3회, 6,430명 참석</li> <li>○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 255회, 61,397명 참석(국내 202회, 57,784명 / 해외 53회 3,613명)</li> <li>○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 16회, 1,643명 참석</li> <li>○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3회, 386명 참석</li> </ul>              |
| 202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평화통일포럼 : 17회, 1,540명 참석, 87백만원</li> <li>○ 해외 평화통일포럼 : 3회, 330명 참석, 222백만원</li> <li>○ 평화통일 시민교실 : 133회, 14,570명 참석</li> <li>○ 국내 지역통일활동 지원 : 216회(강연회·토론회 등 21회, 통일문화행사 등 24회, 공모전 등 20회, 견학·체험 등 21회, 청년·여성 등 30회, 북한이탈주민공감 100회), 160,044명 참석</li> <li>○ 국내 정기회의 : 4회(분기별 1회), 43,188명 참석</li> <li>○ 해외 지역통일활동 지원 : 200회, 36,544명 참석</li> <li>○ 해외 정기회의 : 3회, 6,383명 참석</li> <li>○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 68회, 40,016명 참석(국내 17회, 36,118명 / 해외 50회 3,765명 / 통일어드벤처 1회, 133명)</li> <li>○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 16회, 1,427명 참석</li> <li>○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3회, 401명 참석</li> </ul>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1) 평화통일포럼 사업 및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

내역사업 ‘평화통일포럼’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평화통일담론 형성 및 대북·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포럼과 해외포럼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음.

2025년도 국내포럼은 총 17회 개최되어 1,540명이 참석하였고, 해외포럼은 총 3회 개최되어 330명이 참석하였음.

### < 최근 4년 국내·외 평화통일포럼 실시내역 >

(단위: 회, 명, 백만원)

| 구분    | 2022년 |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국내    | 해외  |
| 개최 횟수 | 51    | 3   | 34    | 4     | 17    | 4   | 17    | 3   |
| 참가자   | 3,190 | 420 | 3,625 | 1,174 | 1,703 | 730 | 1,540 | 330 |
| 예산액   | 203   | 187 | 180   | 386   | 89    | 386 | 89    | 236 |
| 집행액   | 188   | 208 | 181   | 404   | 86    | 377 | 87    | 222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역사업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대북·통일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화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대북·통일정책, 국제정세, 국민소통 및 국민통합, 북한 사회·문화, 역사 등으로 강연 주제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133회 개최되어 14,570명이 참여하였고 3억 9,364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실적 >**

| 개최 횟수 | 참가인원    | 집행예산   | 비고                          |
|-------|---------|--------|-----------------------------|
| 133   | 14,570명 | 394백만원 | 회당 사업비 288만원<br>* 320-01 기준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최근 5년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횟수 및 참가인원 >**

| 연도    | 개최 횟수(회) | 참가인원(명) |
|-------|----------|---------|
| 2021년 | 132      | 8,760   |
| 2022년 | 152      | 9,216   |
| 2023년 | 139      | 12,291  |
| 2024년 | 164      | 18,849  |
| 2025년 | 133      | 14,57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 지역통일활동 지원

내역사업 ‘지역통일활동 지원’은 지역 단위별로 정기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지역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지역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45억 2,3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예산현액 45억 2,600만원 중 45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 지역통일활동 지원 사업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 2024년 집행액                           |       | 2025년 집행액                           |       |
|----------------------|----|-------------------------------------|-------|-------------------------------------|-------|
|                      |    | 집행내역                                | 집행액   | 집행내역                                | 집행액   |
| 계                    |    |                                     | 3,580 |                                     | 4,509 |
| 국내 정기회의              |    | 0.6×229개소<br>×4분기<br>(자료집 : 61)     | 611   | 0.6×229개소<br>×4분기<br>(종합분석 등 : 29)  | 579   |
| 해외 정기회의              |    | 2.35×45개소<br>×3회<br>(자료 번역비 등 : 18) | 335   | 2.34×45개소<br>×3회<br>(자료 번역비 등 : 18) | 334   |
| 지역회의·<br>협의회<br>특화사업 | 국내 | 4.54×246개소<br>(여비 : 20)             | 1,137 | 8.25×216개소<br>(여비 : 20)             | 1,802 |
|                      | 해외 | 11.85×95개소<br>(용역비 등: 371)          | 1,497 | 15.12×95개소<br>(용역비 등 : 358)         | 1,794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3)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내역사업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국가관·통일관 정립 및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재외동포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해외 통일퀴즈 골든벨 지역대회’,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 현액은 6억 3,700만원으로, 6억 3,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 최근 4년 청소년평화통일공감사업 추진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 대상     | 예산액   | 집행액   | 참여현황(학생 수)                                                                           | 진행 방식                                  |
|-------|--------|-------|-------|--------------------------------------------------------------------------------------|----------------------------------------|
| 2022년 | 중·고등학생 | 830   | 835   | ○ 총 17,114명<br>- 통일골든벨: 17,114명                                                      | 온·오프라인 병행                              |
| 2023년 | 중·고등학생 | 1,030 | 1,029 | ○ 총 50,016명<br>- 통일골든벨: 50,016명                                                      | 온·오프라인 병행                              |
| 2024년 | 중·고등학생 | 1,030 | 1,003 | ○ 총 61,397명<br>- 통일골든벨: 28,729명*<br>- 통일퀴즈 원정대: 32,588명(산하)<br>* 국내의 경우 고교생 대상으로 진행  | 온·오프라인 병행<br>* 해외골든벨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온라인 참여 |
| 2025년 | 중·고등학생 | 637   | 637   | ○ 총 40,016명<br>- 통일퀴즈 원정대: 36,118명<br>- 해외 통일골든벨 지역대회: 3,765명<br>-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 133명 | 온·오프라인 병행<br>* 해외골든벨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온라인 참여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 진행 단계 및 2025년 참가 학생 수 현황 >

| 1 단계 | (국내)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 (해외) 통일골든벨 지역대회                                 |
|------|---------------------------------------------------------------------------------------------------|-------------------------------------------------|
|      | 17회 개최<br>- 17개 지역회의·협의회 개최<br>- 국내 청소년 36,118명 참여                                                | 50회 개최<br>- 48개국, 40개 협의회<br>- 해외 청소년 3,765명 참여 |
| ↓    |                                                                                                   |                                                 |
| 2 단계 |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                                                                                       |                                                 |
|      | 1회 개최 (2박3일)<br>- 국내·외 청소년 133명 참여<br>- 해외협의회 지역대회 선발학생 등 79명(해외)<br>-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선발학생 54명(국내)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4)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내역사업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는 대북·통일정책, 평화공존에 대한 재외 동포사회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총 16회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총 1,427명이 참석하였음.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예산현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2억 100만원이고, 이 중 98.5%인 1억 9,800만원 집행되고 3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해외 평화통일정책 강연회 추진 현황 ＞

(단위: 명)

| 권역                | 주관    | 일자     | 장소                             | 주제                           | 참석인원  | 사무처인원 | 방식 |
|-------------------|-------|--------|--------------------------------|------------------------------|-------|-------|----|
| 계(16)             |       |        |                                |                              | 1,427 |       |    |
| 일본<br>(2)         | 일본서부  | 12.7.  | 팔선각                            |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정책 | 50    | 3     | 대면 |
|                   | 일본동부  | 12.8.  | 리가 로얄호텔 도쿄                     |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정책 | 110   |       | 대면 |
| 중국<br>(1)         | 칭다오   | 11.20. | 쉐라톤호텔                          | 최근 한반도 정세와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 100   | 2     | 대면 |
| 아시아·태평양<br>(2)    | 동남아북부 | 11.20. | 필라핀 센추리파크호텔                    |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정책 | 90    | 3     | 대면 |
|                   | 서남아   | 11.26. | 텔리 힐튼 구르그람 바니시티센터              |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정책 | 80    |       | 대면 |
| 미주<br>(8)         | 뉴욕    | 4.10.  | DMOS 연회장                       | 북한과 한반도, 한미동맹: 최근 동향과 시사점    | 200   | 4     | 대면 |
|                   | 토론토   | 4.12.  | 한인회 대강당                        | 국제정세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 120   | 0     | 대면 |
|                   | 중미카리브 | 11.20. | 멕시코시티 Mariot Rufino Tamayo     | 통일환경 변화와 민주평통의 역할            | 80    | 2     | 대면 |
|                   | 브라질   | 11.22. | Fogo De Chao                   | 통일환경 변화와 민주평통의 역할            | 84    |       | 대면 |
|                   | 남미서부  | 11.25.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 통일환경 변화와 민주평통의 역할            | 60    |       | 대면 |
|                   | 하와이   | 11.28. | 호놀룰루 프린스 와이키키호텔                | 통일환경 변화와 민주평통의 역할            | 100   |       | 대면 |
|                   | 애틀랜타  | 12.6.  | The 3120                       |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남북평화공존론'   | 103   | 4     | 대면 |
|                   | 마이애미  | 12.8.  | Hyatt House Hotel at Westshore |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남북평화공존론'   | 40    |       | 대면 |
| 유럽·중동·아프리카<br>(3) | 중앙아시아 | 12.8.  | JANNAT Regency Hotel           | 통일환경 변화와 민주평통의 역할            | 75    | 2     | 대면 |
|                   | 중동부유럽 | 12.11. | LORD Hotel                     | 통일환경 변화와 민주평통의 역할            | 47    |       | 대면 |
|                   | 북유럽   | 12.12. | 주독일대사관                         | 통일환경 변화와 민주평통의 역할            | 88    |       | 대면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5)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내역사업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실천계획 도출을 위해 2021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9,5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실적은 국내 3개 지역에서 총 401명이 참석하였음.

**< 2025년도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 개최 현황 >**

(단위: 백만원)

| 지역        | 일자     | 장소                | 참석                   | 집행액 |
|-----------|--------|-------------------|----------------------|-----|
| 전남<br>목포시 | 6.13.  | 신안비치호텔<br>비발디홀    |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br>147명 | 31  |
| 강원<br>강릉시 | 6.23.  | 세인트컨벤션웨딩<br>컨벤션홀  |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br>133명 | 31  |
| 서울<br>성동구 | 12.11. |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br>가야홀 |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br>121명 | 33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의 구성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세부사업은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등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내역사업은 다시 국내·해외 평화통일포럼 등 4개 내내역사업과 국내·해외 정기회의 등 8개 내내내역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 동 세부사업의 하위사업 분류 >

| 세부사업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내내내역사업              |
|---------------|-------------------|------------------|---------------------|
| 지역협의회<br>활동추진 | 평화통일포럼            | 국내 평화통일포럼        | -                   |
|               |                   | 해외 평화통일포럼        | -                   |
|               | 평화통일 시민교실         | -                | -                   |
|               | 지역통일활동 지원         | 지역협의회 자문건의<br>활동 | 국내 정기회의             |
|               |                   |                  | 해외 정기회의             |
|               |                   | 통일특화사업           | 국내 지역회의·<br>지역협의회   |
|               |                   |                  | 해외<br>지역회의·지역협의회·지회 |
|               |                   |                  | 북한이탈주민<br>통일공감사업    |
|               |                   |                  | 국내 청년<br>통일활동사업     |
|               |                   |                  | 국내 여성<br>통일활동사업     |
|               |                   |                  | 글로벌 전략 특위           |
|               |                   |                  |                     |
|               | 청소년<br>통일공감사업     | -                | -                   |
|               | 해외<br>통일정책강연회     | -                | -                   |
|               | 우리고장 평화통일<br>시민대화 |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참여 실적 편차 해소를 위한 사업별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2025년 동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61억 7,700만원이며, 이 중 61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5%를 기록하였음.

< 2025년 하위 사업별 집행 실적 >

(단위: 백만원)

| 구분             |                         |                        | 예산액<br>(A) | 이·전<br>용 등 | 예산현액<br>(B) | 집행액<br>(C) | 집행률<br>(C/A) |
|----------------|-------------------------|------------------------|------------|------------|-------------|------------|--------------|
| 평화통일<br>포럼     | 국내 평화통일포럼               |                        | 89         | △1         | 88          | 87         | 97.2         |
|                | 해외 평화통일포럼               |                        | 236        | -          | 236         | 222        | 93.9         |
|                | 소계                      |                        | 325        | △1         | 324         | 308        | 94.8         |
| 평화통일 시민교실      |                         |                        | 394        | -          | 394         | 394        | 100.0        |
| 지역통일<br>활동 지원  | 지역<br>협의회<br>자문건의<br>활동 | 국내 정기회의                | 579        | -          | 579         | 579        | 99.9         |
|                |                         | 해외 정기회의                | 335        | -          | 335         | 334        | 99.7         |
|                |                         | 소계                     | 914        | -          | 914         | 913        | 99.8         |
|                | 통일<br>특화사업              | 국내 지역회의·<br>지역협의회      | 845        | -          | 806         | 805        | 95.3         |
|                |                         | 해외<br>지역회의와지역협의<br>화지회 | 1,233      | -          | 1,273       | 1,273      | 103.2        |
|                |                         | 북한이탈주민<br>통일공감사업       | 840        | -          | 769         | 769        | 91.5         |
|                |                         | 국내 청년<br>통일공감사업        | 99         | -          | 130         | 130        | 131.0        |
|                |                         | 국내 여성<br>통일공감사업        | 99         | -          | 99          | 99         | 100.0        |
|                |                         | 글로벌 전략<br>특위           | 494        | 3          | 536         | 521        | 105.6        |
|                |                         | 소계                     | 3,609      | 3          | 3,612       | 3,597      | 99.7         |
|                |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            | 637        | -           | 637        | 637          |
|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                         | 201                    | -          | 201        | 198         | 98.6       |              |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 94                     | -          | 95         | 95          | 101.0      |              |
| 합계             |                         |                        | 6,174      | 3          | 6,177       | 6,140      | 99.5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편, 2025년 하위사업별 참여 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사업은 계획을 초  
과 달성한 반면, 일부 사업은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등 사업 간 성과 편

차가 발생하였음.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한 사업은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108.7%), ▲해외 통일정책강연회(108.6%), ▲청소년 통일공감사업(106.0%), ▲국내 평화통일포럼(103.0%),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103.0%) 등으로 나타남.

반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74.0%), ▲글로벌전략특위(68.1%), ▲국내 청년 통일공감사업(84.2%), ▲해외 정기회의(91.8%), ▲평화통일 시민교실(90.9%), ▲해외 평화통일포럼(94.3%) 등으로 확인됨.

특히 통일특화사업은 계획 19만 5,295명 대비 실제 참여자가 14만 5,488명으로 달성률이 74.5%에 그쳐 4개 내내역사업 가운데 가장 낮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업과 글로벌전략특위 사업의 참여 실적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 < 최근 3년간 하위사업별 참여자수 계획 대비 실적 현황 >

(단위: 명, %)

| 구분             |                     |                 | 2023    |         |       | 2024    |         |       | 2025    |         |       |
|----------------|---------------------|-----------------|---------|---------|-------|---------|---------|-------|---------|---------|-------|
|                |                     |                 | 계획      | 실적      | 달성률   | 계획      | 실적      | 달성률   | 계획      | 실적      | 달성률   |
| 평화통일포럼         | 국내 평화통일포럼           |                 | 3,330   | 3,625   | 109   | 1,680   | 1,703   | 101   | 1,500   | 1,540   | 103   |
|                | 해외 평화통일포럼           |                 | 510     | 534     | 104.7 | 480     | 730     | 152.1 | 350     | 330     | 94.3  |
|                | 소계                  |                 | 3,840   | 4,159   | -     | 2,160   | 2,433   | -     | 1,850   | 1,870   | 101.0 |
| 평화통일 시민교실      |                     |                 | 11,059  | 12,291  | 111.1 | 11,185  | 18,849  | 168.5 | 16,022  | 14,570  | 90.9  |
| 지역통일활동지원       | 지역협의회<br>자문건의<br>활동 | 국내 정기회의         | 38,988  | 39,773  | 102   | 41,848  | 38,176  | 91    | 42,587  | 43,182  | 101   |
|                |                     | 해외 정기회의         | 6,653   | 5,898   | 88.7  | 7,100   | 6,430   | 90.6  | 6,950   | 6,383   | 91.8  |
|                |                     | 소계              | 45,641  | 45,671  | -     | 48,948  | 44,606  | -     | 49,537  | 49,565  | 100.0 |
|                | 통일특화사업              |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 127,800 | 183,881 | 143.9 | 169,171 | 224,770 | 132.9 | 189,138 | 140,036 | 74.0  |
|                |                     |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 36,473  | 39,508  | 108.3 | 36,742  | 41,745  | 113.6 | 33,396  | 36,303  | 108.7 |
|                |                     | 북한이탈 주민 통일 공감사업 | -       | -       | -     | -       | -       | -     | 15,634  | 15,634  | 100.0 |
|                |                     | 국내 청년 통일활동 사업   | -       | -       | -     | 3,080   | 3,200   | 103.9 | 3,130   | 2,634   | 84.2  |
|                |                     | 국내 여성 통일활동 사업   | -       | -       | -     | 3,150   | 3,518   | 111.7 | 1,790   | 1,740   | 97.2  |
|                |                     | 글로벌 전략특위        | -       | -       | -     | 202     | 106     | 52.5  | 207     | 141     | 68.1  |
|                |                     | 소계              | 164,273 | 223,389 | 136   | 7,345   | 8,339   | 113.5 | 195,295 | 145,488 | 74.5  |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                     |                 | -       | 50,016  | -     | 45,942  | 61,397  | 133.6 | 37,741  | 40,016  | 106.0 |
|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                     |                 | 1,274   | 1,175   | 92.2  | 1,069   | 1,643   | 153.7 | 1,314   | 1,427   | 108.6 |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                 | 400     | 420     | 105   | 360     | 386     | 107   | 390     | 401     | 103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와 같이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도 사업별 참여 실적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 것은 사업별 수요 예측과 운영계획의 정확성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특히 통일특화사업은 전체적으로 참여 목표를 크게 하회하였음에도 일부 세부사업은 계획을 초과 달성하는 등 사업 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는 점에서, 사업별 수요와 추진 여건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향후 사업별 특성과 지역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참여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방식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는 등 예산과 사업성과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계획 대비 실적이 반복적으로 크게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차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사업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을 통한 비용 대비 성과 제고 필요

‘글로벌 전략 특위’ 사업은 통일공공외교 활성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전략에 관한 정책건의를 추진하기 위해 2024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은 5억 3,600만원이며, 이 중 5억 2,100만원이 집행되고 1,5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05.6%임.

### < 글로벌 전략 특위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br>(B) | 집행액<br>(C) | 불용액 | 집행률<br>(C/A)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글로벌 전략<br>특위 | 494 | 494   | 42       | 536         | 521        | 15  | 105.6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러나 사업성과를 나타내는 참여 실적은 계획인원 207명 대비 141명에 그쳐 목표달성률이 68.1%에 불과하였음. 더욱이 사업 첫해인 2024년에도 목표달성률이 52.5%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신설 이후 2년 연속 성과목표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동 사업 최근 2년간 참여자수 현황 >

(단위: 명, %)

| 2024년 |     |      | 2025년 |     |      | 비고             |
|-------|-----|------|-------|-----|------|----------------|
| 계획    | 실적  | 달성률  | 계획    | 실적  | 달성률  |                |
| 202   | 106 | 52.5 | 207   | 141 | 68.1 | 2024년<br>신설 사업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편, 글로벌전략특위 사업의 2025년 1인당 소요비용은 36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평화통일포럼(6만원), 평화통일 시민교실(2.6만원),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5.2만원),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3.5만원),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24만원) 등 대부분의 사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임.

### < 사업별 1인당 소요비용 비교 >

(단위: 만원)

| 구분             |                  |               | 1인당 소요비용 |
|----------------|------------------|---------------|----------|
| 평화통일포럼         |                  | 국내 평화통일포럼     | 6.0      |
|                |                  | 국외 평화통일포럼     | 69.7     |
| 평화통일시민교실       |                  |               | 2.6      |
| 지역통일<br>활동지원   | 지역협의회<br>자문건의 활동 | 국내 정기회의       | 1.3      |
|                |                  | 국외 정기회의       | 5.2      |
|                | 통일특화사업           |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 | 0.6      |
|                |                  |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 | 3.5      |
|                |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 4.9      |
|                |                  | 국내 청년 통일활동 사업 | 4.9      |
|                |                  | 국내 여성 통일활동 사업 | 5.7      |
|                |                  | 글로벌 전략특위      | 369.0    |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                  |               | 1.5      |
|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                  |               | 13.9     |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                  |               | 24.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히 동 사업 참여인원은 141명에 불과한 반면 총 5억 2,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고비용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동 사업은 통일공공외교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전략에 관한

정책건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사업 신설 이후 2년 연속 성과목표를 크게 하회하였고, 다른 사업에 비해 1인당 소요비용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2년 연속 목표달성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수요 예측의 적정성, 참여 대상 선정, 사업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민주평통은 글로벌 전략특위 사업의 운영성과와 예산 투입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 및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비용 대비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향후에는 사업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등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 재설계 필요

‘국내 여성 통일활동’ 사업은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여성위원 주도의 통일활동 활성화 및 여성위원 간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액 9,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국내 여성 통일활동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br>(B) | 집행액<br>(C) | 불용액 | 집행률<br>(C/A)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국내 여성<br>통일공감사업 | 99  | 99    | -        | 99          | 99         | -   | 100.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 전국 16개 지역회의·협의회는 총 17개의 ‘국내 여성 통일활동’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위원과 북한이탈주민 간 교류, 문화체험, 멘토링, 통일공감 행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 국내 여성 통일활동 사업 실시현황 >

(단위: 천원)

| 사업주체   | 사업명                          | 주된 참여자    | 집행액   |
|--------|------------------------------|-----------|-------|
| 서울지역회의 | 2025 탈북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통일강연      | 여성위원, 탈북민 | 3,500 |
| 부산지역회의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공감 역사문화 워크숍 | 여성위원, 탈북민 | 6,000 |
| 대구지역회의 | 2025 멘토-멘티 캠프                | 여성위원, 탈북민 | 1,000 |
| 인천지역회의 | 제2회 인천지역 학부모와 함께하는 통일        | 여성위원, 학부모 | 7,700 |

| 사업주체       | 사업명                                  | 주된 참여자        | 집행액    |
|------------|--------------------------------------|---------------|--------|
|            | 좌담회                                  |               |        |
| 광주지역회의     | 여성 멘토멘티 동행 워크                        | 여성위원, 탈북민     | 2,800  |
| 대전지역회의     | 따뜻한 이웃사촌과 함께하는 어찌다 사장                | 여성위원, 탈북민     | 4,100  |
| 울산지역회의     | 울산 여성 통일문화체험                         | 여성위원, 탈북민     | 7,000  |
| 세종지역회의     | 손끝에서 시작되는 평화, 마음을 잇는 정다운 이웃          | 여성위원, 탈북민     | 3,600  |
| 경기지역회의     | 제2회 평화통일을 노래하는 따뜻한 이웃! 북한이탈주민 노래경연대회 | 여성위원, 탈북민     | 16,000 |
| 강원지역회의     | 평화통일염원 리스 만들기                        | 여성위원, 탈북민     | 3,100  |
| 충북지역회의     | 여성위원과 탈북민 여성이 함께하는 힐링캠프              | 여성위원, 탈북민     | 8,240  |
| 충남지역회의     | 따뜻한 이웃사촌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                 | 여성위원, 탈북민     | 9,000  |
| 충남지역회의     | 통일, 우리 스타일로 리더십 스피치로 말하면 현실이 된다      | 여성위원, 사회단체 회원 | 6,400  |
| 경북지역회의     | 한반도 남단에서 올리는 통일의 노래                  | 여성위원          | 3,840  |
| 경남지역회의     | 탈북민 여성과 함께하는 역사 현장 속으로               | 여성위원, 탈북민     | 5,000  |
| 이북5도지역회의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콘서트                | 여성위원, 탈북민     | 6,580  |
| 제주 제주시 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된장 愛 자연 愛 평화를 담다        | 여성위원, 탈북민     | 5,140  |
| 합계         |                                      |               | 99,00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 역시 멘토링, 문화체험, 통일공감 행사, 인식개선 사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예를 들어 동 사업에서 추진한 「탈북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통일강연」, 「여성 멘토멘티 동행 워크」, 「여성위원과 탈북민 여성이 함께하는 힐링캠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콘서트」 등은 사업 대상과 내용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통일정책 발굴, 여성 통일리더 양성, 여성위원 역량 강화 등 동 사업 고유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움.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은 2025년에만 100개 사업, 참여인원 15,634명, 집행액 7억 6,891만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참여 대상 역시 북한이탈주민과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 2025년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추진현황 >

(단위: 명, 천원)

| 구분      | 사업 내용                  | 횟수  | 참여     | 집행액     |
|---------|------------------------|-----|--------|---------|
| 멘토링     | 따뜻한 이웃사촌 맞춤형 멘토링       | 30  | 3,481  | 366,476 |
| 정착·생활지원 | 정착지원 사업 홍보, 생활 지원      | 6   | 2,488  | 35,440  |
| 의견수렴    | 따뜻한 귀 기울임 탈북민 의견수렴     | 8   | 615    | 39,737  |
| 인식개선    | 따뜻한 동행 탈북민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 56  | 9,050  | 327,260 |
| 합 계     |                        | 100 | 15,634 | 768,912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처럼 사업 목적과 참여 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두 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간 차별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복 투자 및 예산 비효율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여성위원 역량 강화, 여성 통일리더 양성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의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예산 운용의 비효율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주민 간 사회적 통합 강화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7억 6,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br>(B) | 집행액<br>(C) | 불용액 | 집행률<br>(C/A) |
|----------------|-----|-------|----------|-------------|------------|-----|--------------|
|                | 본예산 | 추경(A) |          |             |            |     |              |
| 북한이탈주민<br>통일공감 | 840 | 840   | △71      | 769         | 769        | 0   | 91.5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부의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에 따라 정책과제와 세부과제, 이에 따른 예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분하고 있음.<sup>27)</sup>

이에 따라 통일부에는 ‘탈북민 인식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정책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및 포용적 문화 조성 △탈북민 정착 성공 사례 확산 △남북통합문화 진흥 등 탈북민 인식개선 노력이라는 3개 세부과제가 부여되었으며, 관련 예산으로 총 47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반면 민주평통에는 ‘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 정책과제와 ‘민주평

27) 붙임 「과제별 소관 기관 현황」 참조

통·이북5도위원회 멘토링 활성화’ 라는 단일 세부과제가 부여되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비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 부처별 소관 과제 및 2025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정책과제               | 세부과제                       | 부처         | 예산액   | 편성 세부 내역                                              |
|--------------------|----------------------------|------------|-------|-------------------------------------------------------|
| 탈북민 인식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및 포용적 문화 조성 | 통일부        | 450   |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관련 행사                                   |
|                    |                            | 통일부 (하나재단) | 70    | 어울림 한마당 행사                                            |
|                    |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확산             | 통일부 (하나재단) | 827   | 정기간행물 기획 및 운영<br>홍보콘텐츠 발굴 및 확산<br>공익광고 및 프로그램<br>공동기획 |
|                    | 남북통합문화 진흥 등 탈북민 인식 개선 노력   | 통일부        | 3,387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비                                          |
|                    | 소계                         |            | 4,734 | -                                                     |
| 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    | 멘토링 활성화                    | 민주평통       | 840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비                                       |

자료: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그런데 2025년 민주평통이 추진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의 42.6%(3억 2,700만원, 56회)를 통일부 소관 정책과제인 ‘인식 개선’ 사업에 집행하고, 민주평통에 부여된 고유 과제인 ‘멘토링’ 사업의 집행 비중은 47.6%(3억 6,600만원, 30회)에 그쳤음.

## < 2025년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세부 집행 현황 >

(단위: 명, 천원, %)

| 구분       | 사업 내용                   | 횟수  | 참여 인원  | 집행액     | 구성비    |
|----------|-------------------------|-----|--------|---------|--------|
| 멘토링      | 따뜻한 이웃사촌 맞춤형 멘토링        | 30  | 3,481  | 366,476 | 47.6%  |
| 인식개선     | 따뜻한 동행 탈북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 56  | 9,050  | 327,260 | 42.6%  |
| 의견수렴     | 따뜻한 귀 기울임 탈북민 의견수렴      | 8   | 615    | 39,737  | 5.2%   |
| 정착·생활 지원 | 정착지원 사업 홍보 및 생활 지원      | 6   | 2,488  | 35,440  | 4.6%   |
| 합계       |                         | 100 | 15,634 | 768,912 | 100.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한 것은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평통이 총 집행액의 42.6%를 통일부 소관 정책과제인 인식개선 사업에 집행한 것은 정부 시행계획의 기관별 역할분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특히 민주평통에 부여된 고유 과제인 멘토링 사업의 집행 비중(47.6%)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이 타 기관 소관 사업에 배분된 것은 기관별 기능과 역할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할 우려가 있음.

또한 통일부는 동일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확산,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등 관련 사업에 총 47억 3,4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평통이 유사한 인식개선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것

은 사업 간 기능 중복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민주평통은 정부 시행계획에서 부여된 기관별 역할에 부합하도록 사업 내용을 재정비하고, 본래 기능인 멘토링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역할분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통일부 사업과의 중복 추진 및 국회 부대의견 반영 미흡

민주평통이 추진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은 지역사회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 통일부가 남북통합문화센터를 통해 추진하였던 인식개선 사업<sup>28)</sup>과도 사업 내용상 유사한 측면이 있음.

### < 2025년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과 통일부 사업 비교 >

| 구분         | 민주평통(통일공감사업)                                   | 통일부(남북통합문화센터)                                        |
|------------|------------------------------------------------|------------------------------------------------------|
| 문화·예술 행사   | 통일문화축제, 통일음악회, 문화체험, 미식페스타, 영화상영 등             | 남북예술인 합동공연, 전시회, 가을 음악회, 단편영화 등                      |
| 소통·교류 프로그램 | 통일공감 토크콘서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간담회, 어울림 한마당 등 | 남북생애나눔대화, 사회통합 교양 강좌, 북콘서트, 남북더보기 등                  |
| 체험·봉사 활동   | 북한음식 한상차림 체험, 한방 문화 체험, 김장나누기, 전통민속놀이 등        | 남북통합문화체험, 이북음식체험, 음식나눔 자원봉사단, 자원봉사 페스티벌, 남북주민 자원봉사 등 |

자료: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경기지역회의가 추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는 통일부의 통일 기념행사(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행사<sup>29)</sup>)와 목적 및 내용 측면에서

28) 2025년 남북통합문화 진흥 등 탈북민 인식 개선 노력 사업 추진 실적(통일부)

- (프로그램) △통합문화 행사 및 강좌 △남북주민교류 △북향민 심리·언어 지원 △남북주민 자원봉사 등 4개 분야 프로그램 운영  
 \* '25년 △통합문화 분야 16개 프로그램 136회 △주민교류 분야 26개 프로그램 333회 △심리·언어 지원 분야 7개 프로그램 3,177회 △자원봉사 분야 6개 프로그램 54회 등 운영  
 \* △남북예술인 합동공연 △북향민 화가 전시회 △통일연극 △개관 5주년 행사 △자원봉사 페스티벌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 개최

자료: 「202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29) 통일부 소관 2025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및 포용적 문화 조성 세부과제 집행 실적

(단위: 백만 원)

| 부처        | 예산액 | 집행액 | 비고                  |
|-----------|-----|-----|---------------------|
| 통일부       | 450 | 450 |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관련 행사 |
| 통일부(하나재단) | 70  | 70  | 어울림 한마당 행사          |

사실상 차이가 없음.

이에 대해 민주평통은 통일부가 서울 소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민주평통은 전국 지역조직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민주평통이 자체 작성한 「2025년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됨.

해당 결과보고서에서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정부의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맞추어 탈북민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멘토링 중심 사업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음.

#### < 2025년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결과보고서 중 개선 과제 >

##### 나. 개선 과제

- 타 기관(통일부, 남북하나재단 등)의 사업과 중복 분야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간 업무공유 및 협업 등을 통한 의견수렴 필요
- 정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추진 과제(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에 따라 탈북민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멘토링 사업에 집중할 필요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따라서 민주평통은 국회 제출 답변과 기관 내부 공식 평가 결과가 상충

하는 모순된 소명 태도를 지양하고, 자체 진단 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 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북한이탈주민 통일 공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부 및 행정안전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차별화하여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 2025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추진시 통일부 및 행정안전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하도록 한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의 유사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내용을 차별화하는 등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이 실제 사업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사업 종료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우리 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향후 개선과제로 다시 제시하였음. 이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이 사업 기획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국회의 부대의견을 사업 기획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대의견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붙임]

## 〈 과제별 소관 기관 현황 〉

| 6대 전략                               | 주요 정책과제(25)               | 세부과제(45)                           | 소관기관               |
|-------------------------------------|---------------------------|------------------------------------|--------------------|
| 1.탈북민을 포용, 통일 의 동반자 로 인 식 전환        | 1-①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성공사례 확산   | ①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및 포용적 문화 조성       | 통일부                |
|                                     |                           | ② 탈북민 정착 성공사례 확산                   | 통일부                |
|                                     |                           | ③ 남북통합문화 진흥 등 탈북민 인식 개선 노력         | 통일부                |
|                                     | 1-② 멘토링을 통한 성공정착 견인       | ④ 민주평통·이북5도위 멘토링 활성화               | 행안부, 민주평통          |
|                                     | 1-③ 지역사회 교류 및 사회공헌 활동 확산  | ⑤ 탈북민 지역사회 참여 확산 및 탈북민 단체 역할·역량 강화 | 통일부, 지자체           |
|                                     | 1-④ 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제고      | ⑥ 통일·대북정책 참여 통로 확장                 | 통일부                |
| 2.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 정착 지원 강화       | 2-① 탈북민 보호원칙 강화           | ① 탈북민 보호 내실화                       | 통일부, 국정원           |
|                                     |                           | ② 거주지 신변보호 체계 합리화                  | 경찰청, 방첩사, 국정원, 통일부 |
|                                     |                           | ③ 탈북민 인권보호관 제도 내실화                 | 국정원                |
|                                     |                           | ④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 통일부                |
|                                     | 2-②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 ⑤ 해외체류 탈북민 보호체계 강화                 | 외교부                |
|                                     | 2-③ 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지원 강화   | ⑥ 정착기본금 현실화 등 초기지원 강화              | 통일부, 기재부           |
| 3.미래세대 (제3국 출생 등) 교 육 및 건강가정 형 성 지원 | 3-① 제3국 출생 등 탈북민 자녀 교육 지원 | ①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교육지원 확대             | 통일부, 교육부           |
|                                     |                           | ② 건강가정 형성을 위한 양육·보육 지원 강화          | 통일부, 여가부, 교육부      |
|                                     | 3-③ 정규학교 적응 지원            | ③ 입국 초기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통일부, 교육부           |
|                                     |                           | ④ 정규학교 적응력 제고                      | 통일부, 교육부           |
|                                     |                           | ⑤ 대학교육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 통일부                |
|                                     |                           | ⑥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체계화                  | 교육부, 통일부           |
|                                     | 3-④ 특성화대안학교 교육 지원/환경 개선   | ⑦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 지원                 | 통일부, 교육청           |
|                                     |                           | ⑧ 실질적인 대안교육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           | 통일부, 교육청           |
|                                     | 3-⑤ 미래세대 잠재 역량 강화         | ⑨ 청소년 잠재역량 강화 지원                   | 교육부, 교육청           |
|                                     |                           | ⑩ 글로벌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교육부, 통일부           |

| 6대 전략                   | 주요 정책과제(25)                 | 세부과제(45)                                           | 소관기관               |
|-------------------------|-----------------------------|----------------------------------------------------|--------------------|
| 4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촉진 | 3-⑥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 ⑪ 무연고 청소년 보호 강화                                    | 통일부                |
|                         | 4-① 공공부문 및 전문직 진출 확대        | 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탈북민 채용 확대                            | 통일부,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 |
|                         |                             | ② 전문직 양성 확대                                        | 통일부                |
|                         | 4-② 개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③ 재북 경력 활용도 제고                                     | 통일부, 고용부           |
|                         |                             | ④ 취업지원                                             | 통일부, 고용부, 산업부, 여가부 |
|                         |                             | ⑤ 소상공인 등 창업지원                                      | 통일부                |
|                         |                             | ⑥ 영농정착 지원                                          | 통일부, 농식품부          |
|                         |                             | ⑦ 실질적이고 내실화된 직업훈련 강화                               | 통일부                |
|                         | 4-③ 채용 유인체계 마련              | ⑧ 탈북민 채용문화 확산 및 채용기업 인센티브 마련                       | 통일부, 기재부           |
|                         | 4-④ 장기근속 유도 환경 조성           | ⑨ 탈북민 일자리 적응력 제고                                   | 통일부                |
|                         |                             | ⑩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 통일부                |
| 5.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 5-① 위기가구 지원 기반 확충           | ①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                         | 통일부,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
|                         |                             | ②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 통일부                |
|                         |                             | ③ 취약계층 생계 및 생활안정 지원                                | 통일부, 복지부           |
|                         |                             | ④ 생활 속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                                | 법무부, 통일부           |
|                         | 5-② 탈북민 새 출발 지원             | ⑤ 탈북민 새출발 지원                                       | 통일부                |
| 6.북한이탈주민 정책거버넌스 강화      | 5-③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운영         | ⑥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운영                                  | 통일부                |
|                         | 6-① 범정부 협업을 통한 정착지원 체계 강화   | ① 정착지원협의회 내실화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 통일부                |
|                         |                             | ② 공공부문 탈북민 정착지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 통일부                |
|                         | 6-② 지자체 탈북민 정착지원 책무 및 역할 강화 | ③ 지역기반의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 등 지자체의 탈북민 정착지원 정책 및 서비스 기능 강화 | 통일부, 지자체           |
|                         | 6-③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품질 및 역량 강화   | ④ 지역적응센터 서비스 품질 및 역량 강화                            | 통일부                |
|                         | 6-④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 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 통일부                |
|                         |                             |                                                    |                    |

자료: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 사. 시설관리(1100-1132 단위사업)

‘시설관리’ 사업은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호원, 미화원,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관리 운영’ 단일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예산액 4억 800만원 중 3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900만원은 불용되었음.

### < 2025년도 청사관리 운영 사업 결산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예산액 |     | 이·전용<br>등 | 예산현액 | 집행액 | 불용액 | 집행률  |
|--------------|-----|-----|-----------|------|-----|-----|------|
|              | 본예산 | 추경  |           |      |     |     |      |
| ○ 청사관리<br>운영 | 408 | 408 | -         | 408  | 399 | 9   | 97.8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단위사업의 연도별 예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청사관리 직원의 경우 2018년도부터 직접 고용방식(무기계약 근로자)으로 전환하여 청소원 3명, 방호원 6명, 조리원 1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음.

### < 연도별 시설관리 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예산 | 333   | 366   | 383   | 394   | 408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Ⅲ.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

#### 1. 재정상태표<sup>30)</sup>

##### < 재정상태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br>2025(A) | 전기<br>2024(B) | 변동액<br>(C=A-B) | 변동률<br>(C/B) |
|------------|---------------|---------------|----------------|--------------|
| 1. 자산합계    | 28,740        | 28,889        | △149           | △0.5         |
| 가. 금융자산    | -             | -             | -              | -            |
| 나. 일반유형자산  | 28,254        | 28,350        | △96            | △0.3         |
| 다. 무형자산    | 486           | 539           | △53            | △9.8         |
| 라.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 2. 부채합계    | -             | -             | -              | -            |
| 가. 유동부채    | -             | -             | -              | -            |
| 3. 순자산     | 28,740        | 28,889        | △149           | △0.5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0)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재정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②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 가. 자 산<sup>31)</sup>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287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1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음.

금융자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유형자산은 282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건물 1,500만원 증가, 구축물 8,700만원 감소, 기계장치 2,300만원 증가, 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구 3,600만원 감소 등임.

무형자산은 4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00만원 감소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신규취득 등으로 1억 3,300만원이 증가하고, 감가상각으로 1억 8,600만원 감소하였음.

---

3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이하 “유산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나. 부 채<sup>32)</sup>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채로 집계된 금액은 없음.

## 다. 순자산<sup>33)</sup>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순자산은 부채가 없으므로 자산  
가액과 같은 287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1억 4,900만원이 감소하  
였음.

---

3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②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 중 향후 그 이행을 위하여 지출이 발생할 가  
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3)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  
정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뺀 금액으로 표시한다.

③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④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 2. 재정운영 분석<sup>34)</sup>

### < 재정운영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br>2025(A) | 전기<br>2024(B) | 변동액<br>(C=A-B) | 변동률<br>(C/B) |
|---------------------|---------------|---------------|----------------|--------------|
| 1. 프로그램순원가          | 36,144        | 35,085        | 1,059          | 3.0          |
| 2. 관리운영비            | -             | -             | -              | -            |
| 3. 비배분비용            | -             | -             | -              | -            |
| 4. 비배분수익            | 7             | 7             | -              | -            |
| 5. 재정운영순원가(1+2+3-4) | 36,137        | 35,078        | 1,059          | 3.0          |
| 6. 비교환수익 등          | -             | -             | -              | -            |
| 7. 재정운영결과(5-6)      | 36,137        | 35,078        | 1,059          | 3.0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 가.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영비<sup>35)</sup>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프로그램순원가는 361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1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국가보조사업비 증가가 프로그램순원가 증가의 주요 원인임.

프로그램순원가의 주요 증감 사례는 인건비(9억 4,100만원 증가), 운영비(2억 7,700만원 감소), 국고보조사업비(10억 6,800만원 증가), 감가상각비(5,500만원 증가), 기타국가운영비용(7억 1,000만원 감소) 및 기타 이전비용(1,800만원 감소)임.

## 나. 비배분비용<sup>36)</sup>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배분비용은 없음.

---

35)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3) 프로그램순원가

-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
- 행정형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한다)와 같이 징수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 사업형 회계는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과 같이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4) 관리운영비

- ☐ 관리운영비란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함.
- ☐ 기업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포함한다)나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관리운영비를 말함.
- ☐ 관리운영비의 범위는 국가회계실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행정형 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사업형 회계(기업특별회계, 기금):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동 실체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 중 사업의 수행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구분함.

\* 사업형 회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건비와 경비는 간접원가로 보아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함.

36)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② (생략)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 다. 비배분수익<sup>37)</sup>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비배분수익은 7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라.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sup>38)</sup>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재정운영순원가 및 재정운영결과는 동일하며 36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1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37)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② (생략)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38) 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뿐 아니라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낮은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비용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전체 재정활동을 통해 소요된 원가를 나타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④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제28조제2항제2호의 비교환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빼서 표시한다. 다만,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한다.

### 3. 순자산변동 분석<sup>39)</sup>

#### < 순자산변동표 개요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당기<br>2025(A) | 전기<br>2024(B) | 변동액<br>(C=A-B) | 변동률<br>(C/B) |
|-------------------|---------------|---------------|----------------|--------------|
| 1. 기초순자산          | 28,889        | 28,905        | △16            | △0.1         |
| 2. 재정운영결과         | 36,137        | 35,078        | 1,059          | 3.0          |
| 3. 재원의조달및이전       | 35,990        | 35,064        | 926            | 2.6          |
| 4. 조정항목           | △2            | △2            | 0              | -            |
| 5. 기말순자산(1-2+3+4) | 28,740        | 28,889        | △149           | △0.5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가. 기초순자산<sup>40)</sup>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초순자산은 288억 8,900만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대비 변동은 없음.

#### 나. 재정운영결과<sup>41)</sup>

2025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재정운영결과는 361억 3,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10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재정운영표의 내용과 동일함.

3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40)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I. 기초순자산

1. 기초순자산의 정의 및 계정분류

(1) 기초순자산의 정의

기초순자산은 전기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의 금액을 말한다. 당기에 발생한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 수정으로 인하여 기초순자산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전기에 보고한 금액을 “보고금액”으로 별도 표시하고, 회계정책 변경이나 중대한 전기오류수정이 매 회계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1) 재정운영표에서 산출한 재정운영결과는 순자산변동표의 구성에 포함됨.

## 다. 재원의 조달 및 이전<sup>42)</sup>

국고수입, 기타재원의 조달 및 국고이전지출 등으로 구성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59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인 9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라. 조정항목<sup>43)</sup>

2025회계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가 상계되어 전년 대비 변동이 없음.

---

42)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중앙관서 간의 무상이전거래를 말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재원의 조달

- (가) 국고수입
- (나) 부담금수익
- (다) 제재금수익
- (라) 기타비교환수익
- (마) 무상이전수입
- (바) 채무면제이익
- (사) 기타재원조달

(2) 재원의 이전

- (가) 국고이전지출
- (나) 무상이전지출
- (다) 기타재원이전

43) '재무제표의 표시와 부속서류의 작성에 관한 지침' (기획재정부 지침)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거래이나, 수익 또는 비용거래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1) 납입자본의 증감
- (2) 투자증권평가손익
- (3) 파생상품평가손익
- (4) 자산재평가이익
- (5)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 (6) 기타순자산의증감

#### IV.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현황 >

| 조치 결과 | 구분 |    |      | 소계 |
|-------|----|----|------|----|
|       | 주의 | 시정 | 제도개선 |    |
| 조치 완료 | 1  | —  | 4    | 5  |
| 조치 중  | —  | —  | 2    | 2  |
| 소 계   | 1  | —  | 6    | 7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건의 주의와 6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2건은 조치 중, 5건은 조치 완료된 것으로 국회에 보고하였음.

## <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조치결과                                                                                                                                                                                                                                                                                                                                                                                                                 | 조치<br>상황<br>(‘26.6.30) |
|--------------------------------------------------|----------------------------------------------------------------------------------------------------------------------------------------------------------------------------------------------------------------------------------------------------------------------------------------------------------------------------------------------------------------------------------------------------------------------------------------------------------------------------------------------------------------------------------------|----------------------------------------------------------------------------------------------------------------------------------------------------------------------------------------------------------------------------------------------------------------------------------------------------------------------------------------------------------------------------------------------------------------------|------------------------|
| (1)<br>예산 편성 및<br>집행 관련 제도<br>주기적 점검 및<br>현행화 필요 | <p>○ [지적사항] 국가재정법령은 예산집행심의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사항으로는 당해 중앙관서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집행기준 및 이월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p> <p>- 하지만, 민주평통은 동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수를 과소(기준: 7인 이상 → 실제 운영: 5인 이상)하게 운영하였고, 외부 위원 선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심의사항도 통일부 등 다른 중앙관서와는 달리 매우 협소하게 규정(2024년 12월 31일 기준)</p> <p>○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통은 예산심의회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부통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국가재정법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제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화할 것</p> <p>-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약화시켜 운영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p> | <p>○ 예산심의회가 내부통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구체화함</p> <p>*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25.6.23.)</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 주요 개정내용 &gt;</p> <p>◇ 심의위원 수 확대 : (기존) 5명<br/>→ (개정) 7명 이상</p> <p>◇ 외부전문가 위원 2명 위촉(사무처장)</p> <p>◇ 심의사항 구체화 : (기존) 5개<br/>→ (개정) 10개</p> </div> <p>○ 조치완료일 : 2025년 6월 23일</p> | 조치완료                   |
| (2)<br>사업수행방식<br>전환 사업에<br>대한 종합적<br>분석 실시 필요    | <p>○ [지적사항] 2022년 자문위원 역량강화(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등의 사업수행방식을 지역조직 수행방식(민간경상보조비 교부방식)에서 민주평통사무처 직접수행 방식으로 전환 후, 사업수행 실적이 크게 감소함</p> <p>- 사업수행방식 전환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p>                                                                                                                                                                                                                                                                                                                                                                  | <p>○ 자문위원 역량 강화 등 사업수행방식 전환 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 예정임</p> <p>○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p>                                                                                                                                                                                                                                                                                                                            | 조치중                    |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조치결과                                                                                                                                      | 조치<br>상황<br>('26.6.30) |
|--------------------------------------------------------|----------------------------------------------------------------------------------------------------------------------------------------------------------------------------------------------------------------------------------------------------------------------------------------------------------------------------------------------------------------------------------------------|-------------------------------------------------------------------------------------------------------------------------------------------|------------------------|
|                                                        | <p>기 위해서는 수행방식이 전환된 사업별로 그 성과 등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이와 같은 분석이 미흡함</p> <p>○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통은 사업수행방식을 전환한 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별로 그 전환이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 및 양적·질적 성과 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종합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당 사업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p>                                                                                                                                                       |                                                                                                                                           |                        |
| (3)<br>국내 지역회의<br>임차료 예산<br>과소편성 및<br>과다집행 문제<br>해소 필요 | <p>○ [지적사항] 내역사업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은 국내 17개 시·도, 이북5도 및 해외 5개 등 총 23개 지역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 중 국내 지역회의의 임차료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1,950만원을 편성한 후 7,67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편성액의 약 4배를 초과하여 집행하였음</p> <p>- 또한 국내 지역회의의 임차료의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사례는 최근 개최된 지역회의(2020년 및 2022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p> <p>○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 지역회의의 임차료 예산을 편성할 때 과거 집행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모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반복적인 예산 과소편성 및 과다집행 문제를 해소할 것</p> | <p>○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임차료를 2024년 대비 13,960천원 증액 편성하였음</p> <p>- 향후 집행 추이를 검토하여 과다조정 집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p>○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p> | 조치완료                   |
| (4)<br>동일한 성격의<br>경비 혼용 집행<br>방지를 위한                   | <p>○ [지적사항] 내역사업 '평화통일자료지원'은 자문위원에게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민주평통사무처는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p>                                                                                                                                                                                                                                                                                                          | <p>○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영상자료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용역비를 통해 집행해나가겠음</p>                                                                               | 조치완료                   |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조치결과                                                                                                                                     | 조치<br>상황<br>('26.6.30) |
|---------------------------------------------|-------------------------------------------------------------------------------------------------------------------------------------------------------------------------------------------------------------------------------------------------------------------------------------------------------------------------------------------------------------------------------------------------------------------------------------------------------------------------------------------|------------------------------------------------------------------------------------------------------------------------------------------|------------------------|
| 예산 편성 및<br>집행 기준 정비<br>필요                   | <p>를 일반수용비 비목(210-01)과 일반<br/>용역비 비목(210-14)으로 혼용하여<br/>집행하였음</p> <p>-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br/>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br/>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br/>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업무<br/>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br/>용은 일반용역비로 편성하도록 명<br/>확히 규정하고 있음</p> <p>○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br/>의는 불가피한 소규모의 긴급한 소<br/>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br/>고는 동일한 성격의 경비가 혼용 집<br/>행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br/>기준을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br/>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br/>것</p>                                                                            | <p>○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p>                                                                                                           |                        |
| (5)<br>국내 지역회의<br>참석률 제고를<br>위한 대책 마련<br>필요 | <p>○ [지적사항] 격년마다 개최하는 국내<br/>지역회의 참석률이 49.5%로 목표에<br/>미달하는 등 저조한 문제가 있음</p> <p>- 2024년 지역회의의 참석률을 살펴보<br/>면, 국내 18개 지역회의의 평균 참석<br/>률은 49.5%에 그쳤는데, 이는 사업<br/>성과목표 66% 대비 미달한 수치로<br/>서, 제19기 67.2%, 제20기 53.0%에<br/>비해서도 더 낮아진 수치이며, 특히,<br/>지역대표인 지방의회 의원과 청년위<br/>원의 참석률이 각각 18.6%, 38.3%<br/>로 저조하게 나타났음</p> <p>○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통은 자문위<br/>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br/>는 국내 지역회의 프로그램 개선,<br/>다수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br/>는 회의 일정 조기 확정 및 안내 등<br/>국내 지역회의의 참석률을 제고할<br/>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p> | <p>○ 지방의회 회기 등을 고려하여 회<br/>의 개최일정을 조기 확정하여 안<br/>내하고 회의장소 또한 이동편의를<br/>고려하여 선정해 참석률을 제고하<br/>도록 노력하겠음</p> <p>○ 조치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p> | 조치중                    |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조치결과                                                                                                                                                                                                                                                                                                                                                                                                                 | 조치<br>상황<br>('26.6.30) |
|-------------------------------------------------|-----------------------------------------------------------------------------------------------------------------------------------------------------------------------------------------------------------------------------------------------------------------------------------------------------------------------------------------------------------------------------------------------------------------------------------------------------------------------------------------------------------|----------------------------------------------------------------------------------------------------------------------------------------------------------------------------------------------------------------------------------------------------------------------------------------------------------------------------------------------------------------------------------------------------------------------|------------------------|
| (6)<br>소통과 참여<br>활성화를 위한<br>청소년통일공감<br>사업 모색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내내역사업인 ‘통일골든벨’은 청소년이 알아야 할 통일·안보·역사·북한인권 등 전문가가 출제한 문제를 국내·외 청소년들이 경쟁을 펼쳐 입상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나, 최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통일골든벨과 KBS 도전골든벨이 연계한 결승대회가 중단되었으며, 입시 중심 고교 학사 운영에 따라 학교의 협조도 어려워졌음</li> <li>- 또한 현재의 퀴즈 형태 사업은 지식 전달 위주로 청소년들의 상향식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지난해에는 출제 문항별 분포에 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음</li> <li>○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통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현재 민주평통에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사업이 아닌 쌍방향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확보될 수 있는 형태로 사업을 전환할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고등학생 대상 통일골든벨 사업의 추진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2024년 ‘통일골든벨’외에 중학생 중심의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를 국내에서 신규 추진함</li> <li>○ 2025년에도 국내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은 학교,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 사업방식을 확대하여 퀴즈, 토론, 공연이 융합된 참여·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함</li> <li>- 또한 광복 80주년 기념, 국·내외 청소년과 현지 외국인 학생을 초청하여 한류(K-POP 댄스)체험과 통일 현장 견학 등을 병행하여 통일골든벨 결선대회를 진행함</li> <li>○ 조치완료일 : 2025년 12월 31일</li> </ul> | 조치완료                   |
| (7)<br>개의정족수<br>미충족 회의의<br>회의출석수당<br>지급 개선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민주평통은 일부 분과위원회가 개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자문위원에게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였음</li> <li>- 분과위원회 출석률을 살펴보면 2024년 1분기 인권·탈북민지원분과 회의 출석률은 49.1%, 2024년 2분기 종교·민족화합분과회의 출석률은 48.1%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의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참석자들에게 회의출석수당이 지급되었음</li> <li>- 회의출석수당은 자문위원으로서 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위원회 회의의 개의 정족수를 준수하기 위해 △회의 일정 조기 확정, △일정 사전 공지, △개별 연락을 통한 참석확인 후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회의 당일 일부 위원들이 갑작스러운 현안(현업, 출장, 긴급업무 등)으로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상황이 발생하였음.</li> <li>- 분과위원회 회의는 별도의 의결사항이 없고 정책건의를 위한 발제와 토론 등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위원들을 고려해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들이 발표하고 논의한 사항을</li> </ul>                                                                                               | 조치완료                   |

| 시정요구명    |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조치결과     | 조치<br>상황<br>(‘26.6.30) |          |            |     |            |          |             |    |    |      |           |         |             |    |    |      |           |                                                                                                                                                                                                                                                                                                                                                                                                                                                                 |  |
|----------|------------------------------------------------------------------------------------------------------------------------------------------------------------------------------------------------------------------------------------------------------------------------------------------------------------------------------------------------------------------------------------------------------------------------------------------------------------------------------------------------------------------------------------------------------------------------------------------------------------------------------------------------------------------------------------------------------------------------------------------------------------------------------------------------------------------------|----------|------------------------|----------|------------|-----|------------|----------|-------------|----|----|------|-----------|---------|-------------|----|----|------|-----------|-----------------------------------------------------------------------------------------------------------------------------------------------------------------------------------------------------------------------------------------------------------------------------------------------------------------------------------------------------------------------------------------------------------------------------------------------------------------|--|
|          | <p>상적으로 개의한 회의에 출석하여 수행한 자문 또는 정책제안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는 반대급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령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여 개의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개의되지 못한 것이므로 출석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함</p> <p>[2024년도 분과위원회 중 출석률이 50% 미만인 회의]</p> <p>(단위: 명, %, 원)</p> <table> <tr> <th>분과명</th> <th>일자</th> <th>출석<br/>대상</th> <th>출석<br/>인원</th> <th>출석률</th> <th>회의출석<br/>수당</th> </tr> <tr> <td>인권·탈북민지원</td> <td>2024.02.28.</td> <td>55</td> <td>27</td> <td>49.1</td> <td>1,350,000</td> </tr> <tr> <td>종교·민족화합</td> <td>2024.05.17.</td> <td>54</td> <td>26</td> <td>48.1</td> <td>1,300,000</td> </tr> </table> <p>○ [시정요구사항] 민주평통은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의출석수당을 집행한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규정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령을 개정하며, 이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분과위원회 회의에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를 회수하는 것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함께 진행할 것</p> | 분과명      | 일자                     | 출석<br>대상 | 출석<br>인원   | 출석률 | 회의출석<br>수당 | 인권·탈북민지원 | 2024.02.28. | 55 | 27 | 49.1 | 1,350,000 | 종교·민족화합 | 2024.05.17. | 54 | 26 | 48.1 | 1,300,000 | <p>중심으로 정책건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 출석수당을 인당 5만원씩 지급함.</p> <p>○ 개의정족수 미충족 회의에 출석수당을 지급한 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경미한 개의정족수 미충족 회의의 경우, 일부위원의 회의 당일 불출석, 회의 재소집 절차의 곤란성 등을 고려해 개의되었다면 출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p> <p>- 또한, 출석수당은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사기 진작과 지방 참석 위원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미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의견도 확인함.</p> <p>○ 향후,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개의 정족수 준수를 위해 △회의 일정 및 시간 공지 강화 △개별 안내 및 참석 확인 강화 △온라인 참석 병행 등 보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p> <p>○ 조치완료일 : 25년 9월 3일</p> |  |
| 분과명      | 일자                                                                                                                                                                                                                                                                                                                                                                                                                                                                                                                                                                                                                                                                                                                                                                                                                     | 출석<br>대상 | 출석<br>인원               | 출석률      | 회의출석<br>수당 |     |            |          |             |    |    |      |           |         |             |    |    |      |           |                                                                                                                                                                                                                                                                                                                                                                                                                                                                 |  |
| 인권·탈북민지원 | 2024.02.28.                                                                                                                                                                                                                                                                                                                                                                                                                                                                                                                                                                                                                                                                                                                                                                                                            | 55       | 27                     | 49.1     | 1,350,000  |     |            |          |             |    |    |      |           |         |             |    |    |      |           |                                                                                                                                                                                                                                                                                                                                                                                                                                                                 |  |
| 종교·민족화합  | 2024.05.17.                                                                                                                                                                                                                                                                                                                                                                                                                                                                                                                                                                                                                                                                                                                                                                                                            | 54       | 26                     | 48.1     | 1,300,000  |     |            |          |             |    |    |      |           |         |             |    |    |      |           |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